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만화의 거리 등 유지관리 보수 경정(10,000,000원)-기정(10,800,000원) = △800 ◎만화산업 육성 홍보물 제작 경정(2,000,000원)-기정(2,700,000원) = △700
200	사업예산	10,278,789	9,665,633	613,156	[국 4,100,000 도 1,840,000 시 4,338,789]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8,565,260	8,200,000	365,260	[국 4,100,000 도 1,840,000 시 2,625,260] [분 0 교 0]
	402 민간자본이 전	365,260	0	365,260	
		365,260	0	365,260	01 민간자본보조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육성 = 365,260 (도) 200,000 (시) 165,260
220	자체사업	1,713,529	1,465,633	247,896	
	306 출연금	1,607,133	1,357,133	250,000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 경정(1,607,133,000원)-기정(1,357,133,000원) = 250,000
	307 민간이전	82,896	85,000	△2,104	
		82,896	85,000	△2,104	05 민간위탁금

장:(200)사회개발비

관:(2100)교육및문화비

항:(2110)문화산업

세항:(2112)만화산업

세세항:(220)자체사업

[본청]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경정(43,296,000원)-기정(45,000,000원) = △1,704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장비등 관리 경정(39,600,000원)-기정(40,000,000원) = △400	
	2113 문화공간조성	14,161,206	1,176,156	12,985,050		
	200 사업예산	14,098,866	1,113,816	12,985,050		
	220 자체사업	14,098,866	1,113,816	12,985,050		
			401 시설비및부 대비	13,098,866	113,816	12,985,050
		13,098,052	113,002	12,985,050	01 시설비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4차년도) 12,985,050 ●상환원금 9,988,500,000원X1식 = 9,988,500 ●상환이자 2,996,550,000원X1식 = 2,996,550	
	2120 문화예술	13,561,545	12,844,963	716,582	[국 130,000 도 114,600 시 13,280,945 [분 36,000 교 0]	
	2121 문예행정	3,731,110	3,611,244	119,866	[국 120,000 도 62,000 시 3,549,110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105,226	107,360	△2,134		
	120 경상적경비	105,226	107,360	△2,134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 30,000 (시) 30,000
	405 자산취득비	2,000	0	2,000	
		2,000	0	2,000	02 도서구입비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 = 2,000 (도) 2,000
2123	관광영상	2,004,135	1,514,135	490,000	[국 10,000 도 52,600 시 1,905,535] [분 36,000 교 0]
100	경상예산	285,355	225,355	60,000	
120	경상적경비	278,605	218,605	60,000	
	307 민간이전	229,000	169,000	60,000	
		60,000	0	60,000	03 사회단체보조금 ◎디지털문화대전 편찬사업 60,000,000원X1식 = 60,000
200	사업예산	1,718,780	1,288,780	430,000	[국 10,000 도 52,600 시 1,620,180] [분 36,000 교 0]
210	보조사업	585,600	135,600	450,000	[국 10,000 도 52,600 시 523,000] [분 0 교 0]
	401 시설비및부 대비	450,000	0	450,000	
		428,000	0	428,000	01 시설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428,000,000원X1식 = 428,000
		15,000	0	15,000	02 감리비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15,000,000원X1식 = 15,000
		7,000	0	7,000	03 시설부대비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7,000,000원X1식 = 7,000
220	자체사업	1,133,180	1,153,180	△20,000	[국 0 도 0 시 1,097,180] [분 36,000 교 0]
	307 민간이전	1,022,000	1,042,000	△20,000	
		780,000	800,000	△20,000	04 민간행사보조 ◎제11회 부천국제판스틱영화제 경정(780,000,000원)-기정(800,000,000원) = △20,000
2124	문화시설	1,900,943	1,863,227	37,716	
100	경상예산	67,730	76,160	△8,430	
120	경상적경비	67,730	76,160	△8,430	
	201 일반운영비	67,730	76,160	△8,430	

장:(2000)사회개발비

관:(2100)교육및문화비

항:(2120)문화예술

세항:(2124)문화시설

세세항:(120)경상적경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67,730	76,160	△8,430	01 일반운영비 ◎은데미 공원 야외음악당 운영 △3,430 ●공공요금(전기,전화,수도) 경정(380,000원X5월)-기정(380,000원X12월) = △2,660 ●무인전자시스템 용역료 경정(110,000원X5월)-기정(110,000원X12월) = △770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 경정(4,000,000원X1식)-기정(9,000,000원X1식) = △5,000
200	사업예산	1,833,213	1,787,067	46,146	
220	자체사업	1,833,213	1,787,067	46,146	
	307 민간이전	946,013	899,867	46,146	
		946,013	899,867	46,146	05 민간위탁금 ◎박물관 공간사용료 46,146 ●교육박물관 12,261,500원X1식 = 12,262 ●유럽자기박물관 11,808,460원X1식 = 11,809 ●수석박물관 12,243,930원X1식 = 12,244 ●활박물관 9,830,690원X1식 = 9,831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16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16명X12월) = △480
					●급량비 경정(40,000원X16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16명X12월) = △384
	307 민간이전	1,357,588	945,661	411,927	
		14,588	13,261	1,327	02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임차료 경정(14,588,000원)-기정(13,261,000원) = 1,327
		1,343,000	932,400	410,600	04 민간행사보조 ◎학교체육지도자 지원 경정(316,000,000원)-기정(230,400,000원) = 85,600 ◎학교운동부 육성 경정(300,000,000원)-기정(75,000,000원) = 225,000 ◎시장기 종합체육대회 = 100,000
2132	체육시설	25,196,157	9,172,009	16,024,148	[국 0 도 50,000 시 25,146,157]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25,196,157	9,172,009	16,024,148	[국 0 도 50,000 시 25,146,157] [분 0 교 0]
220	자체사업	24,945,257	8,921,109	16,024,148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307 민간이전	6,527,002	6,549,134	△22,132	
		6,527,002	6,549,134	△22,132	05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운영관리 위탁사업비 경정(6,278,563,000)-기정(6,298,563,000원) = △20,000 ◎송내사회체육관 경정(248,439,000원)-기정(250,571,000원) = △2,132
	401 시설비및부 대비	16,262,793	216,513	16,046,280	
		16,257,240	216,000	16,041,240	01 시설비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14,441,600 ●부지매입비 14,000,000,000원X1식 = 14,000,000 ●실시설계용역비 12,000,000,000원X3.68% = 441,600 ◎고강다목적체육관건립 248,140 ●실시설계용역비 6,530,000,000원X3.8% = 248,140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비 50,000 ●시설유지관리비 50,000,000원X1식 = 50,000 ◎인조잔디구장 조성 1,301,5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시설비 1,250,000,000원X1식 = 1,250,000 ●실시 설계비 1,250,000,000원X4.12% = 51,500
		5,553	513	5,040	03 시설부대비 ◎인조잔디구장 조성 1,250,000,000원X0.36% = 4,500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000,000원X1.08% = 540
2133	청소년육성	2,652,770	2,793,117	△140,347	[국 379,690 도 100,000 시 2,173,080]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2,479,442	2,619,789	△140,347	[국 379,690 도 100,000 시 1,999,752]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1,062,880	1,168,510	△105,630	[국 379,690 도 100,000 시 583,190] [분 0 교 0]
	307 민간이전	1,062,880	1,168,510	△105,630	
		8,000	8,800	△800	03 사회단체보조금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경정(8,000,000원)-기정(8,800,000원) = △8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4,000 - 4,000 = 0 (시) 4,000 - 4,800 = △800
		1,054,880	1,159,710	△104,830	05 민간위탁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경정(661,140,000원)-기정(778,450,000원) = △117,31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30,570 - 389,225 = △58,655 (시) 330,570 - 389,225 = △58,655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경정(66,480,000원)-기정(54,000,000원) = 12,48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3,240 - 27,000 = 6,240 (시) 33,240 - 27,000 = 6,240
220	자체사업	1,416,562	1,451,279	△34,717	
	307 민간이전	1,338,088	1,372,805	△34,717	
		1,338,088	1,372,805	△34,717	05 민간위탁금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비 경정(318,283,000원)-기정(370,000,000원) = △51,717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운영비 경정(577,000,000원)-기정(560,000,000원) = 17,000
2134	사회체육	629,038	571,680	57,358	[국 84,436 도 73,878 시 470,724]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356,846	359,788	△2,942	
120	경상적경비	356,846	359,788	△2,942	
	301 일반보상금	68,000	70,500	△2,500	
		50,000	52,500	△2,500	10 행사실비보상금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3,890 - 43,740 = 150 (도) 21,945 - 21,870 = 75 (시) 21,945 - 21,870 = 75
	2135 직장운동부운영	2,545,679	2,587,399	△41,720	
	100 경상예산	2,539,079	2,580,799	△41,720	
	120 경상적경비	2,539,079	2,580,799	△41,720	
	201 일반운영비	219,040	230,040	△11,000	
		219,040	230,040	△11,000	01 일반운영비 ◎직장운동부 산재보험료(근로복지공단) 경정(22,000,000원)-기정(23,000,000원) = △1,000 ◎직장운동부 숙소 임차료(탁구, 테니스부) 경정(130,000,000원)- 경정(140,000,000원) = △10,000
	301 일반보상금	2,320,039	2,350,759	△30,720	
		2,320,039	2,350,759	△30,720	11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운동부 피복 및 장비구입비 △10,720 ●검도부(죽도등 6종) 경정(19,000,000원)-기정(20,000,000원) = △1,000 ●육상부(스파이크등 10종) 경정(18,000,000원)-기정(19,000,000원) = △1,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수영부(수영복등 10종) 경정(7,000,000원)-기정(7,720,000원) = △720 ●레슬링부(레슬링화등 7종) 경정(8,000,000원)-기정(9,000,000원) = △1,000 ●탁구부(라켓등 10종) 경정(29,000,000원)-기정(32,000,000원) = △3,000 ●테니스부(라켓등 9종) 경정(42,000,000원)-기정(46,000,000원) = △4,000 ◎국제대회 참가 및 교류비 경정(50,000,000원)-기정(60,000,000원) = △10,000 ◎운동부 입상장려금 경정(120,000,000원)-기정(130,000,000원) = △10,00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71,121,484	66,723,895	4,397,589	[국 9,095,570 도 5,269,485 시 56,756,429] [분 0 교 0]
2220	위생	125,369	127,207	△1,838	
2221	위생관리	102,297	103,547	△1,250	
100	경상예산	102,297	103,547	△1,250	
120	경상적경비	102,297	103,547	△1,250	
	201 일반운영비	37,637	38,887	△1,250	

장:(2000)사회개발비

관:(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2220)위생

세항:(2221)위생관리

세세항:(120)경상적경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37,637	38,887	△1,250	0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756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14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14명X12월) = △420 ●급량비 경정(40,000원X14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14명X12월) = △336 ◎우편발송료 및 반송료 △494 ●등기 경정(2,787,000원)-기정(3,096,000원) = △309 ●일반 경정(856,000원)-기정(951,000원) = △95 ●반송료 경정(810,000원)-기정(900,000원) = △90
2222	위생지도	23,072	23,660	△588	
100	경상예산	14,972	15,560	△588	
120	경상적경비	14,972	15,560	△588	
	201 일반운영비	8,832	9,420	△588	
		8,832	9,420	△588	01 일반운영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위생영업 길라잡이 발간 경정(2,232,000원)-기정(2,400,000원) = △168 ◎위생관련 인허가 민원서식 제작(신고증, 면허증등) 경정(2,790,000원)-기정(3,000,000원) = △210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정기위생교육 교재제작 경정(2,790,000원)-기정(3,000,000원) = △210
2230	환경보전	58,467,408	58,892,314	△424,906	[국 9,095,570 도 4,675,485 시 44,696,353] [분 0 교 0 0]
2231	환경관리	194,325	196,719	△2,394	
100	경상예산	93,005	94,719	△1,714	
120	경상적경비	76,106	77,820	△1,714	
	201 일반운영비	43,177	44,800	△1,623	
		43,177	44,800	△1,623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1,134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21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21명X12월) = △630 ●급량비 경정(40,000원X21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1명X12월) = △504

장:(2000)사회개발비

관:(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2230)환경보전

세항:(2231)환경관리

세세항:(120)경상적경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우편발송료 및 반송료 △500 ●등기 경정(3,839,000원)-기정(4,128,000원) = △289 ●일반 경정(1,964,000원)-기정(2,112,000원) = △148 ●반송료 경정(837,000원)-기정(900,000원) = △63 ◎칼라프린터기 유지비 경정(2,232,000원)-기정(2,400,000원) = △168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 경정(2,325,000원)-기정(2,500,000원) = △175 ◎업무계획서 등 유인물 제작비 경정(2,790,000원)-기정(3,000,000원) = △210 ◎공해배출단속원 피복비 경정(1,116,000원)-기정(1,200,000원) = △84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 채취비 경정(3,348,000원)-기정(3,600,000원) = △252 ◎하천수질감시지점 표지판 제작 = 900
	301 일반보상금	1,209	1,300	△91	
		1,209	1,300	△91	12 기타보상금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91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미한 신고 보상금 경정(279,000원)-기정(300,000원) = △21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보상금 경정(930,000원)-기정(1,000,000원) = △70
200	사업예산	1,320	2,000	△680	
220	자체사업	1,320	2,000	△680	
	405 자산취득비	320	1,000	△680	
		320	1,000	△68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장실 TV 구입 경정(320,000원)-기정(1,000,000원) = △680
2232	환경정책	1,554,459	1,561,095	△6,636	[국 562,500 도 331,250 시 660,709]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219,959	226,595	△6,636	
120	경상적경비	219,959	226,595	△6,636	
	307 민간이전	214,559	221,195	△6,636	
		214,559	221,195	△6,636	02 민간경상보조 ◎푸른부천21실천 추진 경정(214,559,000원)-기정(221,195,000원) = △6,636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233	대기관리	16,484,906	16,495,046	△10,140	[국 8,182,070 도 4,091,035 시 4,211,801]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90,781	100,921	△10,140	
120	경상적경비	90,781	100,921	△10,140	
	201 일반운영비	90,781	100,921	△10,140	
		90,781	100,921	△10,140	01 일반운영비 ◎대기오염전광판 시설장비 유지관리 경정(27,900,000원)-기정(30,000,000원) = △2,100 ◎대기오염전광판 및 측정소 전기요금 경정(21,000,000원)-기정(29,040,000원) = △8,040
2234	청소관리	34,291,280	34,843,757	△552,477	[국 351,000 도 253,200 시 33,687,080]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109,460	113,271	△3,811	
120	경상적경비	106,700	110,511	△3,811	
	201 일반운영비	60,340	64,151	△3,811	
		60,340	64,151	△3,811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296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0,861,499	21,783,525	△922,026	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총액도급비 △965,143
					●생활쓰레기 경정(10,303,275,000원)-기정(8,915,458,000원) = 1,387,817
					●음식물 경정(4,610,265,000원)-기정(7,277,521,000원) = △2,667,256
					●재활용품 경정(2,609,706,000원)-기정(2,283,983,000원) = 325,723
					●스티로폼 경정(161,480,000원)-기정(143,931,000원) = 17,549
					●여름철 음식물 수집운반비 경정(58,642,000원)-기정(63,336,000원) = △4,694
					●음식물통 세척비 경정(465,202,000원)-기정(489,484,000원) = △24,282
					◎상동 신시가지 가로청소비 경정(742,599,000원)-기정(708,946,000원) = 33,653
					◎골목길 가로청소원 보험가입비 9,464
					●건강보험료 경정(8,290원X300명X12월)-기정(7,390원X300명X12월) = 3,24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고용보험료 경정(1,252,800,000원X7/1,000)-기정(1,194,120,000원X7/1,000) = 411
					●산재보험료 경정(1,252,800,000원X38/1,000)-기정(1,194,120,000원X35/1,000) = 5,813
400	예비비등	457,266	503,206	△45,940	
420	기타	457,266	503,206	△45,940	
	702 기금전출금	457,266	503,206	△45,940	◎삼정동소각장 주민기금 경정(3,367,156,417원X10/100)-기정(3,637,004,000원X10/100) = △26,985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 경정(120,550,000원)-기정(4,650,161,000원X3/100) = △18,955
2235	재활용관리	5,942,438	5,795,697	146,741	
100	경상예산	1,732,658	1,711,878	20,780	
110	인건비	1,507,449	1,486,669	20,780	
	101 인건비	1,507,449	1,486,669	20,780	
		1,507,449	1,486,669	20,780	09 일용인부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재활용선별원 산재보험료 경정(1,385,323,000원X43/1,000)-기정(1,385,323,000원X28/1,000) = 20,780
	200 사업예산	4,209,780	4,083,819	125,961	
	220 자체사업	4,209,780	4,083,819	125,961	
	206 재료비	232,925	152,000	80,925	◎자동개폐장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구입(120리터) 경정(65,000원X1,845개)-기정(65,000원X600개) = 80,925
	307 민간이전	3,827,484	3,782,448	45,036	
		3,827,484	3,782,448	45,036	05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파쇄장 위탁운영비 경정(34,427,000원X12월)-기정(30,674,000원X12월) = 45,036
	2250 녹지공원	11,528,707	6,704,374	4,824,333	[국 0 도 594,000 시 10,934,707] [분 0 교 0]
	2251 녹지공원관리	7,881,288	3,811,970	4,069,318	[국 0 도 594,000 시 7,287,288]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134,736	140,278	△5,542	
	120 경상적경비	92,196	97,738	△5,542	
	201 일반운영비	65,676	71,218	△5,542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65,676	71,218	△5,542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1,242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23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23명X12월) = △690 ●급량비 경정(40,000원X23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3명X12월) = △552 ◎차량유지비(수리,유류,검사료) 경정(25,500,000원)-기정(29,500,000원) = △4,000 ◎녹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경정(1,170,000원)-기정(1,470,000원) = △300
200	사업예산	7,746,552	3,671,692	4,074,860	[국 0 도 594,000 시 7,152,552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2,787,105	1,997,325	789,780	[국 0 도 594,000 시 2,193,105 [분 0 교 0]
	401 시설비및부 대비	2,787,105	1,997,325	789,780	
		2,774,800	1,988,800	786,000	01 시설비 ◎학교숲 조성 경정(558,000,000원)-기정(372,000,000원) = 186,000 (도) [경정] 279,000 - [기정] 186,000 = [증감] 93,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시) 279,000 - 186,000 = 93,000
					◎농업공원 조성 600,000,000원X1식 = 600,000
					(도) 300,000
					(시) 300,000
		12,305	8,525	3,780	03 시설부대비
					◎농업공원 조성 600,000,000원X0.63% = 3,780
220	자체사업	4,959,447	1,674,367	3,285,080	
	401 시설비및부 대비	4,881,647	1,596,567	3,285,080	
		4,851,800	1,576,800	3,275,000	01 시설비
					◎오정대공원조성 1,800,000,000원X1식 = 1,800,000
					◎수주어린이공원조성 1,000,000,000원X1식 = 1,000,000
					◎고강선사유적공원 잔여토지매입비 40,000,000원X1식 = 40,000
					◎원미근린공원조성계획 기본조사설계비 45,000,000원X1식 = 45,000
					◎소사구 삼곡동 567-3번지 토지매입비 390,000,000원X1식 = 390,000
		29,847	19,767	10,080	03 시설부대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수주어린이공원 조성 1,000,000,000원X0.36% = 3,600 ◎오정대공원 조성 1,800,000,000원X0.36% = 6,480
	2252 공원시설	3,647,419	2,892,404	755,015	
	100 경상예산	3,458,357	2,703,342	755,015	
	110 인건비	2,125,568	2,164,604	△39,036	
	101 인건비	2,125,568	2,164,604	△39,036	
		2,070,153	2,109,189	△39,036	09 일용인부임 ◎공원관리원 △37,070 ●기본급 경정(376,992,000원)-기정(385,560,000원) = △8,568 ●상여금 △3,739 -기말수당 경정(86,592,000원)-기정(88,560,000원) = △1,968 -정근수당 경정(77,933,000원)-기정(79,704,000원) = △1,771 ●특수업무수당 경정(47,520,000원)-기정(48,600,000원) = △1,080

장:(2000)사회개발비

관:(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2250)녹지공원

세항:(2252)공원시설

세세항:(110)인건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작업장려수당 경정(36,960,000원)-기정(37,800,000원) = △840
					●연차수당 경정(29,093,000원)-기정(29,754,000원) = △661
					●초과근무수당 △6,246
					- 시간외 근무수당 경정(205,920,000원)-기정(210,600,000원) = △4,680
					- 휴일근무수당 경정(68,904,000원)-기정(70,470,000원) = △1,566
					●연장근로수당 경정(28,710,000원)-기정(29,363,000원) = △653
					●가족수당 △840
					- 배우자 경정(15,840,000원)-기정(16,200,000원) = △360
					- 존속 . 비속 경정(21,120,000원)-기정(21,600,000원) = △480
					●위해보호수당 경정(52,800,000원)-기정(54,000,000원) = △1,200
					●위생수당 경정(47,520,000원)-기정(48,600,000원) = △1,080

장:(2000)사회개발비

관:(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2250)녹지공원

세항:(2252)공원시설

세세항:(110)인건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근속가산금 경정(150,797,000원)-기정(154,224,000원) = △3,427
					●수목관리수당 경정(42,240,000원)-기정(43,200,000원) = △960
					●복리후생비 △3,840
					- 정액급식비 경정(47,520,000원)-기정(48,600,000원) = △1,080
					- 교통비 경정(63,360,000원)-기정(64,800,000원) = △1,440
					- 가계보조비 경정(58,080,000원)-기정(59,400,000원) = △1,320
					●체력단련비 경정(108,240,000원)-기정(110,700,000원) = △2,460
					●명절휴가비 경정(64,944,000원)-기정(66,420,000원) = △1,476
					◎공원관리원 피복비 △187
					●작업화 경정(1,320,000원)-기정(1,350,000원) = △30
					●작업모 경정(396,600원)-기정(405,000원) = △9
					●우의 경정(440,000원)-기정(450,000원) = △10
					●방한장갑 경정(440,000원)-기정(450,000원) = △1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20 경상적경비	255,433	305,545	△50,112	
	201 일반운영비	39,780	50,580	△10,800	
		34,780	45,580	△10,800	01 일반운영비 ◎사회복지관운영 평가위원 수당(과 변경) 경정(0원)-기정(6,300,000원) = △6,300 ◎부천시사회복지(회)관 업무통합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과 변경) 경정(1,500,000원)-기정(6,000,000원) = △4,500
	203 업무추진비	19,200	34,200	△15,000	
		15,000	30,000	△15,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외계층격려 및 사회복지시책 추진 경정(15,000,000원)-기정(30,000,000원) = △15,000
	301 일반보상금	171,030	185,880	△14,850	
		166,280	179,930	△13,65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과 변경) 경정(5,280,000원)-기정(18,930,000원) = △13,650
		0	1,200	△1,200	12 기타보상금 ◎9개복지관에 대한 평가결과 포상금(과 변경) 기정(0원)-경정(1,200,000원) = △1,2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307 민간이전	9,463	18,925	△9,462	
		9,463	18,925	△9,462	02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 운영지원(과 변경) 경정(9,463,000원)-기정(18,925,000원) = △9,462
200 사업예산		2,225,886	4,072,699	△1,846,813	[국 20,000 도 47,756 시 2,021,024] [분 137,106 교 0]
210 보조사업		160,007	210,286	△50,279	[국 20,000 도 47,756 시 43,681] [분 48,570 교 0]
	307 민간이전	160,007	210,286	△50,279	
		0	40,000	△40,000	02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과 변경) 경정(0원)-기정(40,000,000원) = △40,0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0 - 20,000 = △20,000 (시) 0 - 20,000 = △20,000
		160,007	170,286	△10,279	05 민간위탁금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운영(과 변경) 경정(15,325,000원)-기정(25,000,000원) = △9,675 [경 정] [기 정] [증 감] (도) 6,130 - 10,000 = △3,870 (시) 9,195 - 15,000 = △5,805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과 변경) 경정(30,000,000원)-기정(34,350,000원) = △4,35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0,000 -	22,900 =	△2,900
					(도) 10,000 -	11,450 =	△1,450
					◎노숙인보호 및 지원		
					경정(10,560,000원)-기정(6,676,000원) =		3,884
					[경 정]	[기 정]	[증 감]
					(도) 5,280 -	2,438 =	2,842
					(시) 5,280 -	2,438 =	2,842
					(분) 0 -	1,800 =	△1,800
					◎노숙인보호(쉼터운영비)		
					경정(100,000,000원)-기정(100,000,000원) =		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24,285 -	24,285 =	0
					(시) 27,145 -	72,855 =	△45,710
					(분) 48,570 -	2,860 =	45,710
					◎노숙인쉼터 종사자 복지수당		
					경정(4,122,000원)-기정(4,260,000원) =		△138
					[경 정]	[기 정]	[증 감]
					(도) 2,061 -	2,130 =	△69
					(시) 2,061 -	2,130 =	△69
220					[국 0	도 0	시 1,977,343]
자체사업		2,065,879	3,862,413	△1,796,534	[분 88,536	교 0]	
	307						
	민간이전	2,043,377	3,839,911	△1,796,534			
		217,556	435,112	△217,556	02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과 변경)		
					경정(217,556,000원)-기정(435,112,000원) =		△217,556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95,116 - 390,232 = △195,116 (분) 22,440 - 44,880 = △22,440
		1,815,821	3,394,799	△1,578,978	05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과 변경) 경정(131,024,000원)-기정(220,079,000원) = △89,055 ◎복지회관 운영지원(과 변경) 경정(592,850,000원)-기정(1,185,706,000원) = △592,85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과 변경) 경정(60,129,000원)-기정(102,129,000원) = △42,000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변경) (시) △855,067 (분) △788,979 △66,088 ●사회복지관 운영(6개소) 경정(757,570,000원)-기정(1,515,137,000원) = △757,567 [경 정] [기 정] [증 감] (시) 712,726 - 1,425,453 = △712,727 (분) 44,844 - 89,684 = △44,840 ●종사자 특수근무수당(117명) 경정(80,700,000원)-기정(178,200,000원) = △97,5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59,448 - 135,700 = △76,252 (분) 21,252 - 42,500 = △21,248
2312	장애인복지	11,220,241	9,517,853	1,702,388	[국 581,216 도 2,555,616 시 7,675,293] [분 408,116 교 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00 경상예산	408,433	376,853	31,580	
	120 경상적경비	408,433	376,853	31,580	
	201 일반운영비	33,328	7,448	25,880	
		33,328	7,448	25,880	01 일반운영비
					◎장애인재활작업장 공공요금 14,580
					●전기요금 2,000,000원X6월 = 12,000
					●전화요금 30,000원X6월 = 180
					●상하수도요금 400,000원X6월 = 2,400
					◎해밀도서관 공공요금 5,100
					●전기요금 1,000,000원X3월 = 3,000
					●전화요금 300,000원X3월 = 900
					●상하수도요금 400,000원X3월 = 1,200
					◎장애인재활작업장 무인경비시스템 3,600,000원X1식 = 3,600
					◎해밀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2,600,000원X1식 = 2,600
	307 민간이전	294,165	288,465	5,7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66,300	60,600	5,700	04 민간행사보조 ◎신체장애인 극기대회 행사비 = 5,700
200	사업예산	10,811,808	9,141,000	1,670,808	[국 581,216 도 2,555,616 시 7,266,860] [분 408,116 교 0]
210	보조사업	8,975,103	6,624,347	2,350,756	[국 581,216 도 2,555,616 시 5,430,155] [분 408,116 교 0]
	301 일반보상금	624,114	591,884	32,230	
		581,459	549,229	32,23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경정(345,830,000원)-기정(322,000,000원) = 23,83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161,000 - 161,000 = 0 (시) 184,830 - 161,000 = 23,830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경정(58,800,000원)-기정(50,400,000원) = 8,4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29,400 - 25,200 = 4,200 (시) 29,400 - 25,200 = 4,200
	307 민간이전	6,835,249	6,022,123	813,126	
		6,835,249	6,022,123	813,126	02 민간경상보조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경정(53,304,000원)-기정(32,000,000원) = 21,304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정]	[기정]	[증감]
					(도) 15,991 -	9,600 =	6,391
					(시) 37,313 -	22,400 =	14,913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경정(37,456,000원)-기정(14,000,000원) =		23,456
					[경정]	[기정]	[증감]
					(도) 18,728 -	7,000 =	11,728
					(시) 18,728 -	7,000 =	11,728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66,922
						(도)	33,461
						(시)	33,461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		= 549,840
						(국)	384,888
						(도)	82,476
						(시)	82,476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 56,792
						(국)	28,396
						(도)	14,198
						(시)	14,198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 84,660
						(국)	42,330
						(도)	21,165
						(시)	21,165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경정(164,039,000원)-기정(153,887,000원) =		10,152
					[경정]	[기정]	[증감]
					(도) 49,025 -	49,025 =	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시)	(분)				
					(시)	85,396	-	75,244	=	10,152
					(분)	29,618	-	29,618	=	0
	401 시설비및부 대비	1,505,400	0	1,505,400						
		1,505,400	0	1,505,400	01 시설비					
					◎해밀도서관 시설비(과목경정)				=	1,505,400
	220 자체사업	1,836,705	2,516,653	△679,948						
	307 민간이전	841,200	111,200	730,000						
		841,200	111,200	730,000	05 민간위탁금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	730,000
	401 시설비및부 대비	796,380	2,206,328	△1,409,948						
		795,528	2,206,328	△1,410,800	01 시설비					
					◎해밀도서관 도시가스 인입공사				=	94,600
					◎해밀도서관 시설비 (과목경정) 경정(0원)-기정(1,505,400,000원)				=	△1,505,400
		852	0	852	03 시설부대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해밀도서관 도시가스 인입공사 94,600,000원X0.9% = 852
2320	생활보호	6,868,746	6,865,921	2,825	[국 3,364,541 도 365,789 시 3,138,416] [분 0 교 0]
2321	저소득주민보호	4,201,515	4,203,745	△2,230	[국 3,364,541 도 365,789 시 471,185]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4,101,515	4,103,745	△2,230	[국 3,364,541 도 365,789 시 371,185]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4,101,015	4,103,245	△2,230	[국 3,364,541 도 365,789 시 370,685] [분 0 교 0]
	301 일반보상금	6,120	8,350	△2,230	
		6,120	8,350	△2,230	01 사회복지적수혜금 ◎지역봉사사업비 경정(6,120,000원)-기정(8,350,000원) = △2,23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612 - 612 = 0 (시) 5,508 - 5,508 = 0 (분) 0 - 2,230 = △2,230
2322	의료보호	2,667,231	2,662,176	5,055	
400	예비비등	2,667,231	2,662,176	5,055	
420	기타	2,667,231	2,662,176	5,055	
	701 기타회계전 출금	2,667,231	2,662,176	5,055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경정(2,667,231,000원)-기정(2,662,176,000원) = 5,055
2330	가정복지	34,168,555	30,142,320	4,026,235	[국 8,811,033 도 8,350,150 시 16,148,863] [분 858,509 교 0]
2331	가정정책	2,181,819	2,039,769	142,050	[국 326,034 도 395,566 시 1,392,374] [분 67,845 교 0]
100	경상예산	102,484	106,370	△3,886	
120	경상적경비	102,484	106,370	△3,886	
	201 일반운영비	29,424	31,310	△1,886	
		26,724	28,310	△1,586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026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19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19명X12월) = △570 ●급량비 경정(40,000원X19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19명X12월) = △456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560 ●회의 및 여성발전기금 심의 경정(4,200,000원X90/100)-기정(4,200,000원) = △42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수당 경정(1,400,000원X90/100)-기정(1,400,000원) = △140
		2,700	3,000	△300	02 행사운영비 ◎부천여성문화제 행사진행 및 홍보물 제작비 경정(3,000,000원X90/100)-기정(3,000,000원) = △300
	301 일반보상금	13,700	15,700	△2,000	
		12,900	14,900	△2,000	10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위원회 워크숍 경정(0원)-기정(2,000,000원) = △2,000
200 사업예산		1,979,335	1,833,399	145,936	[국 326,034 도 395,566 시 1,189,890] [분 67,845 교 0]
210 보조사업		1,190,067	1,028,399	161,668	[국 326,034 도 395,566 시 400,622] [분 67,845 교 0]
	301 일반보상금	4,800	4,800	0	
		4,800	4,800	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경정(4,800,000원)-기정(4,800,000원) = 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2,400 - 4,800 = △2,400 (시) 2,400 - 0 = 2,400
	307 민간이전	1,179,267	1,017,599	161,668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861,812	745,219	116,593	02 민간경상보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경정(70,000,000원)-기정(60,000,000원) = 10,0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35,000 - 30,000 = 5,000
					(시) 35,000 - 30,000 = 5,000
					◎모자복지시설 운영(이양사무)
					경정(172,710,000원)-기정(124,739,000원) = 47,971
					[경 정] [기 정] [증 감]
					(도) 30,000 - 30,000 = 0
					(시) 77,971 - 30,000 = 47,971
					(분) 64,739 - 64,739 = 0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경정(20,000,000원)-기정(12,106,000원) = 7,894
					[경 정] [기 정] [증 감]
					(도) 4,500 - 4,500 = 0
					(시) 12,394 - 4,500 = 7,894
					(분) 3,106 - 3,106 = 0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경정(25,000,000원)-기정(20,000,000원) = 5,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5,000 - 20,000 = 5,000
					◎가정, 성폭력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정(31,728,000원)-기정(30,000,000원) = 1,728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1,728 - 30,000 = 1,728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가정,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 경정(3,000,000원)-기정(2,500,000원) = 500 [경 정] [기 정] (국) 3,000 - 2,500 = [증 감] 500
					◎여성 상담실 종사자 보수교육 경정(0원)-기정(1,000,000원) = △1,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500 = △500 (도) 0 - 250 = △250 (시) 0 - 250 = △25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경정(87,000,000원)-기정(42,500,000원) = 44,5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0,450 - 29,750 = 700 (도) 6,525 - 6,375 = 150 (시) 50,025 - 6,375 = 43,65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경정(153,351,000원)-기정(153,351,000원) = 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123,829 - 22,016 = 101,813 (시) 29,522 - 22,016 = 7,506 (분) 0 - 109,319 = △109,319
		309,955	264,880	45,075	05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사업 = 104,018 (국) 72,812 (도) 15,603 (시) 15,603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여성회관 운영비 경정(397,207,000원)-기정(410,000,000원) = △12,793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 운영비 경정(392,061,000원)-기정(395,000,000원) = △2,939
2332	노인복지	16,115,690	12,060,660	4,055,030	[국 3,124,947 도 4,163,251 시 8,297,194] [분 530,298 교 0]
100	경상예산	123,750	70,100	53,650	
120	경상적경비	123,750	70,100	53,650	
	307 민간이전	113,250	59,600	53,650	
		88,250	34,600	53,650	02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43,650 ◎실버드림악단 악기등 장비 구입 = 10,000
200	사업예산	15,991,940	11,990,560	4,001,380	[국 3,124,947 도 4,163,251 시 8,173,444] [분 530,298 교 0]
210	보조사업	15,771,940	11,790,560	3,981,380	[국 3,124,947 도 4,163,251 시 7,953,444] [분 530,298 교 0]
	201 일반운영비	8,880	0	8,880	
		8,880	0	8,880	01 일반운영비 ◎노인돌보미 홍보 = 8,880 (국) 6,216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 1,332
					(시) 1,332
	307 민간이전	9,342,619	8,823,174	519,445	
		7,781,156	7,885,284	△ 104,128	02 민간경상보조
					◎유급 봉사원 확대 운영
					경정(156,000,000원)-기정(312,000,000원) = △ 156,0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46,800 - 144,000 = △97,200
					(시) 109,200 - 168,000 = △58,800
					◎노인 돌보미 지원
					경정(583,738,000원)-기정(681,725,000원) = △97,987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08,616 - 515,900 = △ 107,284
					(도) 87,561 - 110,550 = △22,989
					(시) 87,561 - 55,275 = 32,286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경정(305,520,000원)-기정(500,220,000원) = △ 194,7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13,864 - 378,544 = △ 164,680
					(도) 45,828 - 81,117 = △35,289
					(시) 45,828 - 40,559 = 5,269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경정(718,000,000원)-기정(647,458,000원) = 70,542
					[경 정] [기 정] [증 감]
					(도) 139,050 - 140,676 = △ 1,626
					(시) 494,196 - 422,028 = 72,168
					(분) 84,754 - 84,754 = 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정(359,948,000원)-기정(215,076,000원) = 144,872 [경 정] [기 정] [증 감] (도) 43,672 - 43,672 = 0 (시) 275,888 - 131,016 = 144,872 (분) 40,388 - 40,388 = 0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경정(1,262,700,000원)-기정(1,124,000,000원) = 138,7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631,350 - 562,000 = 69,350 (도) 315,675 - 281,000 = 34,675 (시) 315,675 - 281,000 = 34,675
					◎시니어클럽 운영 경정(261,184,000원)-기정(261,184,000원) = 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22,500 - 15,000 = 7,500 (시) 219,198 - 226,698 = △7,500 (분) 19,486 - 19,486 = 0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 33,600 (국) 16,800 (도) 8,400 (시) 8,400
					◎노인일자리사업(은빛사랑나눔단지원) = 7,300 (도) 3,650 (시) 3,650
					◎은빛사랑채 설치 경정(240,000,000원)-기정(180,000,000원) = 60,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 정]	[기 정]	[증 감]
					(도) 120,000 -	120,000 =	0
					(시) 120,000 -	60,000 =	60,000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경정(877,126,000원)-기정(936,277,000원) = △59,151		
					[경 정]	[기 정]	[증 감]
					(도) 502,192 -	549,513 =	△47,321
					(시) 125,548 -	137,378 =	△11,830
					(분) 249,386 -	249,386 =	0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경정(928,288,000원)-기정(979,592,000원) = △51,304		
					[경 정]	[기 정]	[증 감]
					(도) 671,911 -	723,215 =	△51,304
					(시) 180,804 -	180,804 =	0
					(분) 75,573 -	75,573 =	0
		1,561,463	937,890	623,573	05 민간위탁금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경정(567,450,000원)-기정(328,945,000원) = 238,505		
					[경 정]	[기 정]	[증 감]
					(도) 90,000 -	90,000 =	0
					(시) 458,505 -	220,000 =	238,505
					(분) 18,945 -	18,945 =	0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경정(553,361,000원)-기정(318,945,000원) = 234,416		
					[경 정]	[기 정]	[증 감]
					(도) 90,000 -	90,000 =	0
					(시) 444,416 -	210,000 =	234,416
					(분) 18,945 -	18,945 =	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경정(440,652,000원)-기정(290,000,000원) = 150,652 [경 정] [기 정] [증 감] (도) 90,000 - 90,000 = 0 (시) 350,652 - 200,000 = 150,652
	401 시설비및부 대비	5,967,386	2,967,386	3,000,000	
		5,617,386	2,617,386	3,000,000	01 시설비 ◎노인복지 시설 건립 3,000,000 (국) 0 (도) 0 (시) 3,000,000 ●무료전문요양 시설 건립 경정(2,552,386,000원)-기정(1,552,386,000원) = 1,00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76,193 - 776,193 = 0 (도) 776,193 - 776,193 = 0 (시) 1,000,000 - 0 = 1,000,000 ●노인의료 복지시설 건립 2,000,000,000원X1식 = 2,000,000
	402 민간자본이 전	453,055	0	453,055	
		453,055	0	453,055	01 민간자본보조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경정(22,500,000원)-기정(12,600,000원) = 9,9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8,820 - 8,820 = 0 (도) 1,890 - 1,890 = 0 (시) 11,790 - 1,890 = 9,90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경정(60,000,000원)-기정(18,000,000원) = 42,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2,000 - 12,600 = 29,400 (도) 9,000 - 2,700 = 6,300 (시) 9,000 - 2,700 = 6,30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경정(40,000,000원)-기정(32,000,000원) = 8,0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8,000 - 8,000 = 0 (시) 24,500 - 16,500 = 8,000 (분) 7,500 - 7,500 = 0
		641,200	757,200	△116,000	12 기타보상금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 경정(406,000,000원)-기정(522,000,000원) = △116,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84,200 - 365,400 = △81,200 (도) 60,900 - 78,300 = △17,400 (시) 60,900 - 78,300 = △17,400
2334 보육정책		12,689,304	12,804,049	△114,745	[국 4,821,164 도 3,133,529 시 4,734,611] [분 0 교 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00 경상예산	248,957	249,867	△910	
	120 경상적경비	248,957	249,867	△910	
	201 일반운영비	6,540	7,450	△910	
		6,540	7,450	△910	01 일반운영비 ◎보육정책위원 심의수당 경정(2,730,000원)-기정(3,640,000원) = △910
	200 사업예산	12,440,347	12,554,182	△113,835	[국 4,821,164 도 3,133,529 시 4,485,654]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12,012,575	12,117,743	△105,168	[국 4,821,164 도 3,133,529 시 4,057,882] [분 0 교 0]
	301 일반보상금	5,376,230	5,661,598	△285,368	
		5,347,480	5,632,848	△285,36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지원 = 21,600 (도) 10,800 (시) 10,800 ◎저소득 보육료 지원 경정(4,560,904,000원)-기정(5,460,904,000원) = △900,000 [경정] [기정] [증감] (국) 1,809,308 - 1,809,308 = 0 (도) 904,654 - 904,654 = 0 (시) 1,846,942 - 2,746,942 = △900,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둘째아(0~1세)이상 보육료 지원 경정(764,976,000원)-기정(171,944,000원) = 593,032 [경 정] [기 정] [증 감] (도) 382,488 - 85,972 = 296,516 (시) 382,488 - 85,972 = 296,516
	307 민간이전	5,991,220	5,775,020	216,200	
		5,991,220	5,775,020	216,200	02 민간경상보조 ◎국공립 법인 종사자 인건비 경정(4,670,480,000원)-기정(4,525,100,000원) = 145,38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338,676 - 2,262,550 = 76,126 (도) 1,165,902 - 1,131,275 = 34,627 (시) 1,165,902 - 1,131,275 = 34,627 ◎영아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경정(146,000,000원)-기정(106,000,000원) = 4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3,000 - 53,000 = 20,000 (도) 36,500 - 26,500 = 10,000 (시) 36,500 - 26,500 = 10,000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경정(280,000,000원)-기정(310,000,000원) = △3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40,000 - 54,410 = 85,590 (도) 70,000 - 27,205 = 42,795 (시) 70,000 - 228,385 = △158,385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경정(66,060,000원)-기정(55,960,000원) = 10,1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3,030 - 27,980 = 5,050 (도) 16,515 - 13,990 = 2,525 (시) 16,515 - 13,990 = 2,525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경정(453,800,000원)-기정(425,000,000원) = 28,8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226,900 - 212,500 = 14,400 (시) 226,900 - 212,500 = 14,400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경정(52,740,000원)-기정(39,820,000원) = 12,92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23,150 - 19,910 = 3,240 (시) 29,590 - 19,910 = 9,680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경정(51,000,000원)-기정(42,000,000원) = 9,0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30,000 - 21,000 = 9,000 (시) 21,000 - 21,000 = 0
	308 자치단체등 이전	36,000	72,000	△36,000	
		36,000	72,000	△36,000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경정(36,000,000원)-기정(72,000,000원) = △36,0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급량비 40,000원X15명X7월X95/100 = 3,990 ◎복사기 임차료 120,000원X7월 = 840 ◎민간위탁 운영기준 마련 T/F팀 운영 4,200 ●위원 참석수당 70,000원X5명X4회 = 1,400 ●자문위원 보고서 작성 자문비 1,000,000원X1명 = 1,000 ●민간위탁운영 자료집 발간 18,000원X100부 = 1,800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위원수당(과 변경) 70,000원X5명X9개소X2일 = 6,300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과 변경) 40,000,000원X15%X3/4 = 4,500
	202 여비	7,350	0	7,350	
		7,350	0	7,350	01 국내여비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여비 70,000원X15명X7월 = 7,350
	203 업무추진비	19,750	0	19,750	
		18,000	0	18,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 및 서비스연계시책 추진 = 18,000
		1,750	0	1,75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307 민간이전	2,124,020	0	2,124,020	
		280,000	0	280,000	02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과 변경)
					(도) 140,000
					(시) 140,000
		1,844,020	0	1,844,020	05 민간위탁금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과 변경)
					(도) 3,870
					(시) 5,805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과 변경)
					(국) 2,092
					(도) 1,046
					(시) 11,046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국) 1,264,310
					(도) 270,923
					(시) 270,924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 7,002
					(도) 3,501
					(시) 3,501
					●교육 코디네이터
					1,351,000원X1명X6월 = 8,106
					(국) 4,053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 2,027 (시) 2,026
					●D/B 코디네이터 983,000원X1명X6월 = 5,898
					(국) 2,949 (도) 1,474 (시) 1,475
220	자체사업	1,861,587	0	1,861,587	[국 0 도 0 시 1,773,059] [분 88,528 교 0]
	307 민간이전	1,859,331	0	1,859,331	
		1,859,331	0	1,859,331	05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과 변경) = 217,556 (시) 195,116 (분) 22,440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과 변경) 88,055 ●운영비 = 12,928 ●인건비 = 64,447 ●사업비 = 10,680 ◎복지회관 운영비(과 변경) 656,653 ●삼정복지회관 = 255,962 ●고강복지회관 = 212,802

장:(2000)사회개발비

관:(2300)사회보장비

항:(2340)주민생활지원

세항:(2341)주민생활

세세항:(220)자체사업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곡복지회관 = 124,092 ●삼정복지회관(수영장) = 63,797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과 변경) 42,000 ●운영비 = 20,400 ●인건비 = 21,600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변경) 855,067 <li style="padding-left: 20px;">(시) 788,979 <li style="padding-left: 20px;">(분) 66,088 ●사회복지관 운영(6개소) = 757,567 <li style="padding-left: 20px;">(시) 712,727 <li style="padding-left: 20px;">(분) 44,840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97,500 <li style="padding-left: 20px;">(시) 76,252 <li style="padding-left: 20px;">(분) 21,248
	405 자산취득비	2,256	0	2,256	
		2,256	0	2,256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6 ●문서세단기 = 888 ●스캐너 = 485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디지털카메라 = 333
					●텔레비전 = 380
					●천공펀치 = 170
2343	평생학습운영	126,387	0	126,387	
100	경상예산	122,387	0	122,387	
110	인건비	5,000	0	5,000	
	101 인건비	5,000	0	5,000	
		5,000	0	5,000	08 기타직보수 ◎평생학습전문직(비전임) 퇴직금(과 변경) = 5,000
120	경상적경비	117,387	0	117,387	
	201 일반운영비	64,547	0	64,547	
		21,132	0	21,132	01 일반운영비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과 변경) 13,498 ●기본경비 4,268 - 일반수용비 = 2,0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 급량비 = 2,268
					●공공요금 500,000원X7월 = 3,500
					●복사기 임차료 120,000원X7월 = 840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70,000원X13명X1회 = 910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참석수당 70,000원X7명X2회 = 980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서류 유인등 제경비 500,000원X3회 = 1,500
					●평생학습 관련 책자 구입 5,000원X100종X3회 = 1,500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과 변경) = 4,634
					◎평생학습 심포지엄 교재 제작(과 변경) 5,000원X400부 = 2,000
					◎제4회 평생학습축제 추진 급식비(과 변경) 5,000원X5명X40일 = 1,000
		43,415	0	43,415	02 행사운영비
					◎제4회 평생학습 축제(과 변경) 36,415
					●텐트 및 집기 임차 20,000,000원X1식 = 20,000
					●개막식 진행물품 구입 2,000,000원X1식 = 2,0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막식 출연료 500,000원X3개단체 = 1,500 ●가로변 현수막 제작 50,000원X40개소 = 2,000 ●대형현수막 제작 3,000,000원X1개소 = 3,000 ●초청장 제작 500원X3,000부 = 1,500 ●행사홍보 리플렛 제작 1,000원X4,000부 = 4,000 ●시상자 표창 415 - 걸지 3,500원X100명 = 350 - 속지 650원X100명 = 65 ●시민참여 공모작품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X5명X4개부문 = 2,000 ◎전국.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참가(과 변경) 7,000 ●홍보부스 설치 5,000,000원X1식 = 5,000 ●체험마당 프로그램 운영 1,000,000원X2개 = 2,000
	202 여비	5,360	0	5,360	
		5,360	0	5,360	01 국내여비 ◎평생학습 관련 관외여비(과 변경) 3,000

장:(2000)사회개발비

관:(2300)사회보장비

항:(2340)주민생활지원

세항:(2343)평생학습운영

세세항:(120)경상적경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타 시.군 견학 = 2,000 ●학술행사 자료수집 및 교육지원 추진 여비 = 1,000 ◎평생학습교육 지원 국내여비(과 변경) = 2,360
	301 일반보상금	28,480	0	28,480	
		26,530	0	26,530	10 행사실비보상금 ◎평생학습 민간참여자 참가보상(과 변경) = 2,000 ◎평생학습 관계인사 연수운영(과 변경) 2,050,000원X1회 = 2,050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과 변경) 4,500,000원X1회 = 4,500 ◎소외계층지원 자활교육사업(과 변경) 30,000원X266명 = 7,980 ◎제4회 평생학습축제 참여마당프로그램 운영(과 변경) 200,000원X30단체 = 6,000 ◎제4회 평생학습축제 참여단체 보상(과 변경) 200,000원X20단체 = 4,000
		1,950	0	1,950	12 기타보상금 ◎제4회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자(과 변경) 1,95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410	주택사업	279,166	289,156	△9,990	
2411	건축행정	76,366	78,200	△1,834	
100	경상예산	76,366	78,200	△1,834	
120	경상적경비	76,366	78,200	△1,834	
	201 일반운영비	47,426	49,260	△1,834	
		47,426	49,260	△1,834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134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21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21명X12월) = △630 ●급량비 경정(40,000원X21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1명X12월) = △504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경정(10,600,000원)-기정(12,000,000원) = △1,400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000원X7명 = 700
2413	주택관리	202,800	210,956	△8,156	
100	경상예산	202,800	210,956	△8,156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20 경상적경비	202,800	210,956	△8,156	
	201 일반운영비	8,800	10,956	△2,156	
		8,800	10,956	△2,156	01 일반운영비 ◎건설안전전문가 의견청취 및 건축물 전문기술자 안전점검 수수료 경정(7,300,000원)-기정(9,456,000원) = △2,156
	307 민간이전	194,000	200,000	△6,000	
		194,000	200,000	△6,000	02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단지별 보조금 지원 경정(194,000,000원)-기정(200,000,000원) = △6,000
	2420 지역사회개발	40,862	41,780	△918	
	2421 지역개발	40,862	41,780	△918	
	100 경상예산	40,862	41,780	△918	
	120 경상적경비	40,862	41,780	△918	
	201 일반운영비	18,882	19,800	△918	
		18,882	19,800	△918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918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광고료 경정(34,000원X4단X12cmX11회X2개)-기정(34,000원X4단X12cmX12회X2개) = △3,264 ◎도시계획위원회운영 및 위원참석수당 △1,500 ●속기용역비 경정(500,000원X5회)-기정(500,000원X8회) = △1,500
200	사업예산	7,210,607	2,617,083	4,593,524	[국 685,435 도 1,600,000 시 4,925,172] [분 0 교 0 0]
210	보조사업	4,182,368	0	4,182,368	[국 685,435 도 1,600,000 시 1,896,933] [분 0 교 0 0]
	201 일반운영비	310	0	310	
		310	0	310	01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단속 급량비 = 310 (국) 310
	202 여비	500	0	500	
		500	0	500	01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 500 (국) 500
	401 시설비및부 대비	981,558	0	981,558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978,037	0	978,037	01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 684,625
					(시) 293,412
					●고강취락 소3-3~5호선 도로개설
					760,000,000원X1식 = 760,000
					(국) 532,000
					(시) 228,000
					●양지취락 소3-8호선 도로개설
					218,037,000원X1식 = 218,037
					(국) 152,625
					(시) 65,412
		3,521	0	3,521	03 시설부대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21
					●시설부대비
					978,037,000원X0.36/100 = 3,521
	402 민간자본이 전	3,200,000	0	3,200,000	
		3,200,000	0	3,200,000	01 민간자본보조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비
					3,200,000,000원X1식 = 3,200,000
					(도) 1,600,000
					(시) 1,600,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20 자체사업	3,028,239	2,617,083	411,156		
		207 연구개발비	3,028,239	2,617,083	411,156	
			3,028,239	2,617,083	411,156	01 용역비 ◎도시계획재정비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411,156,000원X1식 = 411,156
	2432 지적관리	63,961	79,906	△15,945	[국 766 도 0 시 63,195]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52,046	67,991	△15,945		
	120 경상적경비	52,046	67,991	△15,945		
		201 일반운영비	52,046	67,991	△15,945	
			52,046	67,991	△15,945	01 일반운영비 ◎도로명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경정(0)-기정(159,444,940원X10/100) = △15,945
	2433 도시개발	6,511,028	6,137,999	373,029	[국 0 도 3,225,235 시 3,285,793]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131,093	137,299	△6,206		
	120 경상적경비	131,093	137,299	△6,206		
		201 일반운영비	68,864	119,139	△50,275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68,864	119,139	△50,275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756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14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14명X12월) = △420
					●급량비
					경정(40,000원X14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14명X12월) = △336
					◎신문공고료
					경정(4,000,000원X93/100)-기정(4,000,000원) = △280
					◎도시정비사업 홍보 안내문 제작
					경정(6,000,000원X93/100)-기정(6,000,000원) = △420
					◎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화재보험료
					경정(20,000,000원X90/100)-기정(20,000,000원) = △2,000
					◎총괄계획가(MP)보수 및 수당(과목경정)
					경정(0)-기정(60,696,000원) = △60,696
					◎관련 전문가(자문MP)보수 및 수당(과목경정)
					경정(0)-기정(6,283,000원) = △6,283
					◎사업협의회 수당
					경정(70,000원X23명X2회X8월)-기정(70,000원X10명X1회X8월) = 20,160
	301 일반보상금	44,069	0	44,069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44,069	0	44,069	12 기타보상금 ◎관련전문가(자문MP)보수및 수당 204,020원X2명X9월X4회X3개지구 = 44,069
200	사업예산	6,379,935	6,000,700	379,235	[국 0 도 3,225,235 시 3,154,700]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6,379,235	0	6,379,235	[국 0 도 3,225,235 시 3,154,000] [분 0 교 0]
	207 연구개발비	6,308,000	0	6,308,000	
		6,308,000	0	6,308,000	01 용역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6,308,000,000원X1식 = 6,308,000 (도) 3,154,000 (시) 3,154,000
	301 일반보상금	71,235	0	71,235	
		71,235	0	71,235	12 기타보상금 ◎총괄계획가(MP)보수 및 수당 = 71,235 (도) 71,235
220	자체사업	700	6,000,700	△6,000,000	
	207 연구개발비	0	6,000,000	△6,000,000	
		0	6,000,000	△6,000,000	01 용역비

장:(2000)사회개발비

관:(2400)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항:(2430)도시개발

세항:(2433)도시개발

세세항:(220)자체사업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경정(0)-기정(6,000,000,000원) = △6,000,000
세 출 합 계		503,627,151	395,802,904	107,824,247	
일 반 회 계 세출총계		680,440,838	560,141,038	120,299,8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국	도	교	시
2000	사회개발비	4,245,459	5,239,855	△994,396	[국 1,450,085 [분 59,723	도 706,660 교	시 2,028,991 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4,245,459	5,239,855	△994,396	[국 1,450,085 [분 59,723	도 706,660 교	시 2,028,991 0]	
2210	보건	4,245,459	5,239,855	△994,396	[국 1,450,085 [분 59,723	도 706,660 교	시 2,028,991 0]	
2211	원미구보건소운영	4,245,459	5,239,855	△994,396	[국 1,450,085 [분 59,723	도 706,660 교	시 2,028,991 0]	
100	경상예산	805,825	806,334	△509	[국 162,930 [분 0	도 48,215 교	시 594,680 0]	
110	인건비	496,149	494,882	1,267	[국 162,930 [분 0	도 48,215 교	시 285,004 0]	
	101 인건비	496,149	494,882	1,267				
		365,133	363,866	1,267	10 일시사역인부임			
					◎건강보험 부담금			
					경정(2,014,000원)-기정(914,000원) =			1,100
					◎국민연금 부담금			
					경정(3,796,000원)-기정(1,836,000원) =			1,960
					◎고용보험 부담금			
					경정(1,097,000원)-기정(531,000원) =			566
					◎산재보험료 부담금			
					경정(380,000원)-기정(204,000원) =			176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 △ 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02,240	101,960	280	12 기타보상금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경정(3,000,000원)-기정(2,720,000원) = 28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500 - 1,360 = 140 (도) 1,500 - 1,360 = 140
	307 민간이전	2,862,486	3,905,305	△1,042,819	
		1,991,028	3,057,682	△1,066,654	01 의료및구료비 ◎보건소예방접종약품등 경정(260,560,000원)-기정(200,731,000원) = 59,829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30,280 - 100,365 = 29,915 (도) 65,140 - 50,183 = 14,957 (시) 65,140 - 50,183 = 14,957 ◎국가예방접종병의원접종비 경정(0)-기정(987,733,000원) = △987,733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493,867 = △493,867 (도) 0 - 246,933 = △246,933 (시) 0 - 246,933 = △246,933 ◎노인의치보철사업비 경정(56,000,000원)-기정(58,800,000원) = △2,8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8,000 - 29,400 = △1,400 (시) 28,000 - 29,400 = △1,4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노인의치보철수리비 = 800 (국) 400 (시) 40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경정(672,200,000원)-기정(673,200,000원) = △1,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36,100 - 336,600 = △500 (도) 168,050 - 168,300 = △250 (시) 168,050 - 168,300 = △25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경정(117,500,000원)-기정(187,500,000원) = △7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94,000 - 150,000 = △56,000 (시) 23,500 - 37,500 = △14,000
					◎치매조기검진사업 = 4,000 (도) 2,000 (시) 2,000
					◎불임부부 지원사업 경정(172,250,000원)-기정(242,000,000원) = △69,75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86,125 - 121,000 = △34,875 (도) 43,063 - 60,500 = △17,437 (시) 43,062 - 60,500 = △17,438
		4,900	2,900	2,000	03 사회단체보조금 ◎국가만성병(응급실손상등) 감시 경정(4,900,000원)-기정(2,900,000원) = 2,0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국) [경정] 4,900 - [기정] 2,900 = [증감] 2,000
		741,640	719,805	21,835	05 민간위탁금 ◎암조기 검진사업 경정(181,640,000원)-기정(229,805,000원) = △48,165 (국) [경정] 90,820 - [기정] 114,903 = △24,083 (도) 45,410 - 57,451 = △12,041 (시) 45,410 - 57,451 = △12,04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70,000 (국) 56,000 (시) 14,000
220	자체사업	333,867	236,691	97,176	
	307 민간이전	329,767	232,591	97,176	
		259,926	162,750	97,176	01 의료및구료비 ◎간염,성병등 검사실 시약(원미구) 경정(40,000,000원)-기정(20,000,000원) = 20,000 ◎간염,성병등 검사실 시약(소사구) 경정(85,000,000원)-기정(40,000,000원) = 45,000 ◎간염,성병등 검사실 시약(오정구) 경정(20,000,000원)-기정(10,000,000원) = 10,000 ◎임산부철분제 구입 112원X1,320명X150일 = 22,176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국	도	시	교	0]
2000	사회개발비	2,154,523	2,832,567	△678,044	[국 850,981 [분 0	도 381,487 교 0	시 922,055 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154,523	2,832,567	△678,044	[국 850,981 [분 0	도 381,487 교 0	시 922,055 0]		
2210	보건	2,154,523	2,832,567	△678,044	[국 850,981 [분 0	도 381,487 교 0	시 922,055 0]		
2212	소사구보건소운영	2,154,523	2,832,567	△678,044	[국 850,981 [분 0	도 381,487 교 0	시 922,055 0]		
100	경상예산	493,031	482,315	10,716	[국 98,220 [분 0	도 32,485 교 0	시 362,326 0]		
110	인건비	309,712	297,022	12,690	[국 98,220 [분 0	도 32,485 교 0	시 179,007 0]		
	101 인건비	309,712	297,022	12,690					
		28,850	31,850	△3,000	09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건비 경정(28,850,000원)-기정(31,850,000원) =			△3,000	
		211,833	196,143	15,690	10 일시사역인부임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부임 경정(87,480,000원)-기정(72,900,000원) =			14,58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3,740 - 36,450 = 7,290 (도) 21,870 - 18,225 = 3,645 (시) 21,870 - 18,225 = 3,645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인부임 경정(4,960,000원)-기정(6,048,000원) = △1,088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480 - 3,024 = △544 (도) 1,240 - 1,512 = △272 (시) 1,240 - 1,512 = △272 ◎의료기술대체인력 보조인부임 73,250원X1명X30일 = 2,198
120	경상적경비	183,319	185,293	△1,974	
	201 일반운영비	131,939	133,613	△1,674	
		131,139	132,813	△1,674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1,674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31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31명X12월) = △930 ●급량비 경정(40,000원X31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31명X12월) = △744
	202 여비	26,340	26,640	△300	
		26,340	26,640	△300	01 국내여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 경정(300,000원)-기정(600,000원) = △300
200	사업예산	1,661,492	2,350,252	△688,760	[국 752,761 도 349,002 시 559,729]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1,566,532	2,086,778	△520,246	[국 752,761 도 349,002 시 464,769] [분 0 교 0]
	201 일반운영비	91,577	152,012	△60,435	
		91,577	152,012	△60,435	01 일반운영비 ◎한방 건강증진사업 경정(4,720,000원)-기정(4,500,000원) = 22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360 - 2,250 = 110 (시) 2,360 - 2,250 = 110 ◎금연클리닉운영 경정(28,600,000원)-기정(52,330,000원) = △23,73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4,300 - 26,165 = △11,865 (시) 14,300 - 26,165 = △11,865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경정(19,500,000원)-기정(23,500,000원) = △4,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9,750 - 11,750 = △2,000 (시) 9,750 - 11,750 = △2,000 ◎병의원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비 경정(0원)-기정(10,000,000원) = △10,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5,000 =	△5,000	
					(도) 0 - 2,500 =	△2,500	
					(시) 0 - 2,500 =	△2,500	
					◎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비		
					경정(3,831,000원)-기정(3,756,000원) =	75	
					(국) 1,914 - 1,877 =	37	
					(도) 958 - 939 =	19	
					(시) 959 - 940 =	19	
					◎임신부 산전관리비		
					경정(0원)-기정(24,000,000원) =	△24,000	
					(국) 0 - 9,600 =	△9,600	
					(도) 0 - 7,200 =	△7,200	
					(시) 0 - 7,200 =	△7,20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홍보비		
					(국) 500		
					(도) 250		
					(시) 250		
	202 여비	1,220	1,420	△200			
		1,220	1,420	△200	01 국내여비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경정(200,000원)-기정(400,000원) =	△200	
					(국) 100 - 200 =	△100	
					(도) 100 - 200 =	△1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301 일반보상금	57,400	54,430	2,970	
		2,970	0	2,97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 2,970 (국) 1,485 (도) 1,485
	307 민간이전	1,408,335	1,874,916	△466,581	
		1,272,621	1,759,204	△486,583	01 의료및구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경정(463,280,000원)-기정(464,280,000원) = △1,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31,640 - 232,140 = △500 (도) 115,820 - 116,070 = △250 (시) 115,820 - 116,070 = △250 ◎금연클리닉 치료비 경정(60,000,000원)-기정(36,270,000원) = 23,73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0,000 - 18,135 = 11,865 (시) 30,000 - 18,135 = 11,865 ◎국가예방접종 병원원 접종비 경정(0원)-기정(504,775,000원) = △504,775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252,387 = △252,387 (도) 0 - 126,194 = △126,194 (시) 0 - 126,194 = △126,194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경정(133,292,000원)-기정(102,780,000원) = 30,512 [경 정] [기 정] [증 감] (국) 66,646 - 51,392 = 15,254 (도) 33,323 - 25,694 = 7,629 (시) 33,323 - 25,694 = 7,62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경정(70,000,000원)-기정(110,000,000원) = △4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6,000 - 88,000 = △32,000 (시) 14,000 - 22,000 = △8,000 ◎치매조기검진사업 = 4,950 (국) 2,475 (시) 2,475
		1,250	800	450	03 사회단체보조금 ◎국가만성병(응급실손상) 감시 경정(1,250,000원)-기정(800,000원) = 45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250 - 800 = 450
		134,464	114,912	19,552	05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사업비 경정(94,464,000원)-기정(114,912,000원) = △20,448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7,232 - 57,456 = △10,224 (도) 23,616 - 28,728 = △5,112 (시) 23,616 - 28,728 = △5,112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40,000 (국) 32,000 (시) 8,000
	405 자산취득비	8,000	4,000	4,000	
		8,000	4,000	4,0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성분 분석기 구입(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 4,000 (국) 2,000 (시) 2,000
220	자체사업	94,960	263,474	△168,514	
	307 민간이전	94,960	82,864	12,096	
		78,256	66,160	12,096	01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112원X720명X150일 = 12,096
	401 시설비및부 대비	0	180,610	△180,610	
		0	180,610	△180,610	01 시설비 ◎건물내력구조공사비 경정(0원)-기정(180,610,000원) = △180,610

장:(2000)사회개발비

관:(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2210)보건

세항:(2212)소사구보건소운영

세세항:(220)자체사업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세 출 합 계		2,154,523	2,832,567	△678,044	
일 반 회 계 세출총계		680,440,838	560,141,038	120,299,8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국	도	교	시	구
2000	사회개발비	2,250,203	2,673,805	△423,602	[국 753,548 [분 58,234	도 448,511 교 0]	시 989,910	구 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250,203	2,673,805	△423,602	[국 753,548 [분 58,234	도 448,511 교 0]	시 989,910	구 0]	
2210	보건	2,250,203	2,673,805	△423,602	[국 753,548 [분 58,234	도 448,511 교 0]	시 989,910	구 0]	
2213	오정구보건소운영	2,250,203	2,673,805	△423,602	[국 753,548 [분 58,234	도 448,511 교 0]	시 989,910	구 0]	
100	경상예산	518,680	495,736	22,944	[국 100,852 [분 0	도 35,801 교 0]	시 382,027	구 0]	
110	인건비	375,278	346,776	28,502	[국 100,852 [분 0	도 35,801 교 0]	시 238,625	구 0]	
	101 인건비	375,278	346,776	28,502					
		319,836	291,334	28,502	10 일시사역인부임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인부임 경정(3,644,000원)-기정(6,500,000원) = △2,856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822 - 3,250 = △1,428 (도) 911 - 1,625 = △714 (시) 911 - 1,625 = △714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부임 경정(102,060,000원)-기정(72,900,000원) = 29,16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1,030 - 36,450 = 14,580 (도) 25,515 - 18,225 = 7,290 (시) 25,515 - 18,225 = 7,29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의료기술대체인력 보조인부임 73,250원X1명X30일 = 2,198
	120 경상적경비	143,402	148,960	△5,558	
	201 일반운영비	87,182	88,640	△1,458	
		86,182	87,640	△1,458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458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27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27명X12월) = △810 ●급량비 경정(40,000원X27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7명X12월) = △648
	202 여비	23,400	23,100	300	
		23,400	23,100	300	01 국내여비 ◎전염병관리실무자 교육여비 300,000원X1명 = 300
	301 일반보상금	22,540	26,940	△4,400	
		10,700	15,100	△4,400	12 기타보상금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장려금 경정(8,000,000원)-기정(12,000,000원) = △4,0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 △ 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공중보건기사 방문진료 출장여비 경정(800,000원)-기정(1,200,000원) = △400
200	사업예산	1,731,523	2,178,069	△446,546	[국 652,696 도 412,710 시 607,883] [분 58,234 교 0]
210	보조사업	1,632,202	2,078,873	△446,671	[국 652,696 도 412,710 시 508,562] [분 58,234 교 0]
	201 일반운영비	141,546	139,232	2,314	
		141,546	139,232	2,314	01 일반운영비 ◎한방 건강증진사업 경정(4,720,000원)-기정(4,500,000원) = 220 [경정] [기정] [증감] (국) 2,360 - 2,250 = 110 (시) 2,360 - 2,250 = 110 ◎방문보건인력교육 훈련비 경정(3,906,000원)-기정(3,756,000원) = 150 [경정] [기정] [증감] (국) 1,952 - 1,877 = 75 (도) 976 - 939 = 37 (시) 978 - 940 = 38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 = 944 (국) 472 (도) 236 (시) 236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홍보비 = 1,000 (국) 5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 250 (시) 250
					◎병의원예방접종확대사업운영비 경정(0원)-기정(10,000,000원) = △1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5,000 = △5,000 (도) 0 - 2,500 = △2,500 (시) 0 - 2,500 = △2,500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목경정) = 10,000 (국) 5,000 (도) 2,500 (시) 2,500
	202 여비	840	640	200	
		840	640	200	01 국내여비 ◎전염병관리실무자 교육여비 = 200 (국) 100 (도) 100
	307 민간이전	1,344,836	1,794,021	△449,185	
		1,117,656	1,549,589	△431,933	01 의료및구료비 ◎노인의치보철사업 경정(25,100,000원)-기정(27,000,000원) = △1,9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2,550 - 13,500 = △950 (시) 12,550 - 13,500 = △95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임신부 산전관리비 경정(0원)-기정(19,250,000원) = △19,25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7,700 = △7,700 (도) 0 - 5,775 = △5,775 (시) 0 - 5,775 = △5,775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경정(72,500,000원)-기정(82,500,000원) = △1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8,000 - 66,000 = △8,000 (시) 14,500 - 16,500 = △2,00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정(370,640,000원)-기정(371,640,000원) = △1,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85,320 - 185,820 = △500 (도) 92,660 - 92,910 = △250 (시) 92,660 - 92,910 = △250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경정(0원)-기정(414,876,000원) = △414,876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207,438 = △207,438 (도) 0 - 103,719 = △103,719 (시) 0 - 103,719 = △103,719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경정(109,573,000원)-기정(84,480,000원) = 25,093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4,787 - 42,240 = 12,547 (도) 27,393 - 21,120 = 6,273 (시) 27,393 - 21,120 = 6,273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목경정) 경정(0원)-기정(10,000,000원) = △1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5,000 = △5,000 (도) 0 - 2,500 = △2,500 (시) 0 - 2,500 = △2,500
		137,188	154,440	△17,252	05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 10,000 (국) 8,000 (시) 2,000 ◎암조기 검진사업비 경정(87,188,000원)-기정(114,440,000원) = △27,252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3,594 - 57,220 = △13,626 (도) 21,797 - 28,610 = △6,813 (시) 21,797 - 28,610 = △6,813
220	자체사업	99,321	99,196	125	
	307 민간이전	70,894	70,769	125	
		65,860	52,780	13,080	01 의료및구료비 ◎임산부철분제 구입비 112원X600명X150일 = 10,080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경정(7,000,000원)-기정(4,000,000원) = 3,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5,034	17,989	△12,955	05 민간위탁금
					◎간호사업무대행경비 경정(3,855,000원)-기정(15,419,000원) = △11,564
					◎퇴직금 경정(1,179,000원)-기정(2,570,000원) = △1,391
세 출 합 계		2,250,203	2,673,805	△423,602	
일 반 회 계 세출총계		680,440,838	560,141,038	120,299,8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국	도	교	시
2000	사회개발비	6,561,234	6,609,646	△48,412	[국 617,000 [분 63,682	도 287,000 교	시 5,593,552 0]	
2100	교육및문화비	6,561,234	6,609,646	△48,412	[국 617,000 [분 63,682	도 287,000 교	시 5,593,552 0]	
2140	사회교육	6,561,234	6,609,646	△48,412	[국 617,000 [분 63,682	도 287,000 교	시 5,593,552 0]	
2141	도서관운영	6,561,234	6,609,646	△48,412	[국 617,000 [분 63,682	도 287,000 교	시 5,593,552 0]	
100	경상예산	1,117,541	1,182,274	△64,733				
120	경상적경비	883,853	948,586	△64,733				
	201 일반운영비	833,213	897,946	△64,733				
		823,213	887,946	△64,733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2,484
					●일반수용비			
					경정(50,000원X46명X12월X95/100)-기정(50,000원X46명X12월)			△1,380
					●급량비			△1,104
					- 직원			
					경정(40,000원X46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46명X12월)			△1,104
					◎소방시설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경정(7,623,000원)-기정(9,900,000원)			△2,277

장:(2000)사회개발비

관:(2100)교육및문화비

항:(2140)사회교육

세항:(2141)도서관운영

세세항:(120)경상적경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국	도	시	교
					◎시설장비유지비 △6,765 ●도서관 조경수 관리 경정(8,885,000원)-기정(15,650,000원) = △6,765 ◎심곡도서관 국유지사용료 경정(0원)-기정(47,297,000원) = △47,297 ◎도서정리용품 경정(60,900,000원)-기정(66,810,000원) = △5,910			
200	사업예산	5,443,693	5,427,372	16,321	[국 617,000	도 287,000	시 4,476,011]	
					[분 63,682	교 0]		
210	보조사업	4,250,282	4,182,600	67,682	[국 617,000	도 287,000	시 3,282,600]	
					[분 63,682	교 0]		
	307 민간이전	629,000	625,000	4,000				
		74,000	70,000	4,000	02 민간경상보조			
					◎공사립문고 자료구입(좋은터문고)			= 4,000
						(도)		2,000
						(시)		2,000
	405 자산취득비	513,682	450,000	63,682				
		513,682	450,000	63,682	02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경정(513,682,000원)-기정(450,000,000원) =			63,682
					(도) [경정] 150,000 - [기정] 150,000 =			[증감] 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시) 300,000 - 300,000 = 0 (분) 63,682 - 0 = 63,682
	220 자체사업	1,193,411	1,244,772	△51,361	
	307 민간이전	680,153	733,014	△52,861	
		680,153	733,014	△52,861	05 민간위탁금 ◎청사경비용역 민간위탁비 경정(326,529,000원) - 기정(379,390,000원) = △52,861
	405 자산취득비	32,946	31,446	1,500	
		32,946	31,446	1,5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마루도서관 키폰 전화기 구입비 300,000원X5대 = 1,500
세 출 합 계		6,561,234	6,609,646	△48,412	
일 반 회 계 세출총계		680,440,838	560,141,038	120,299,8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000	사회개발비	53,802,820	50,352,489	3,450,331	[국 24,089,944 도 7,793,448 시 21,728,544] [분 190,884 교 0]
2100	교육및문화비	187,158	186,458	700	[국 9,749 도 29,600 시 147,809] [분 0 교 0]
2120	문화예술	40,300	52,300	△12,000	
2122	문예진흥	40,300	52,300	△12,000	
100	경상예산	40,300	52,300	△12,000	
120	경상적경비	40,300	52,300	△12,000	
	307 민간이전	22,000	34,000	△12,000	
		22,000	34,000	△12,000	04 민간행사보조 ◎지역단위문화축제 △12,000 ●원미동사람들의 문학의밤축제(원미1동) 경정(0원)-기정(3,000,000원) = △3,000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역곡1동) 경정(0원)-기정(3,000,000원) = △3,000 ●먹적골 한마음 축제(심곡3동) 경정(0원)-기정(3,000,000원) = △3,000 ●주민 한마음체육행사(상2동) 경정(0원)-기정(3,000,000원) = △3,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국	도	시	교	0
2130	체육청소년	146,858	134,158	12,700	[국 9,749 [분 0	도 29,600	시 107,509]	교 0	0
2133	청소년육성	132,858	120,158	12,700	[국 9,749 [분 0	도 29,600	시 93,509]	교 0	0
200	사업예산	132,858	120,158	12,700	[국 9,749 [분 0	도 29,600	시 93,509]	교 0	0
210	보조사업	95,858	89,158	6,700	[국 9,749 [분 0	도 29,600	시 56,509]	교 0	0
	307 민간이전	95,858	89,158	6,700					
		95,858	89,158	6,700	05 민간위탁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 (국비) 경정(16,760,000원)-기정(15,000,000원) = 1,76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000 - 5,000 = 0 (도) 1,760 - 0 = 1,760 (시) 10,000 - 10,000 = 0 ◎청소년 공부방 운영 (도비) 경정(69,600,000원)-기정(64,660,000원) = 4,94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27,840 - 27,120 = 720 (시) 41,760 - 37,540 = 4,220				
220	자체사업	37,000	31,000	6,000					
	307 민간이전	37,000	31,000	6,000					
		37,000	31,000	6,000	05 민간위탁금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풍림아파트 공부방 운영 경정(14,400,000원X1개소)-기정(12,000,000원X1개소) = 2,400 ◎중4동 한라 2,3단지 공부방 운영 경정(11,300,000원X2개소)-기정(9,500,000원X2개소) = 3,60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6,457,503	6,274,048	183,455	[국 0 도 400 시 6,457,103] [분 0 교 0]
2230	환경보전	3,949,960	3,961,872	△11,912	[국 0 도 400 시 3,949,560] [분 0 교 0]
2231	환경관리	307,883	311,115	△3,232	[국 0 도 400 시 307,483]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302,683	304,815	△2,132	
120	경상적경비	228,616	230,748	△2,132	
	201 일반운영비	188,776	190,908	△2,132	
		188,776	190,908	△2,132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632 ●일반수용비 경정(40,000원X34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34명X12월) = △816 ●급량비 경정(40,000원X34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34명X12월) = △816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환경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경정(1,500,000원)-기정(2,000,000원) = △500
200	사업예산	5,200	6,300	△1,100	[국 0 도 400 시 4,800] [분 0 교 0]
220	자체사업	4,400	5,500	△1,100	
	405 자산취득비	4,400	5,500	△1,100	
		4,400	5,500	△1,1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구입 경정(4,400,000원X1대)-기정(5,500,000원X1대) = △1,100
2234	청소관리	3,640,377	3,647,757	△7,380	
100	경상예산	3,522,077	3,523,457	△1,380	
110	인건비	3,485,364	3,484,664	700	
	101 인건비	3,485,364	3,484,664	700	
		3,485,364	3,484,664	700	09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및 환경기동반 정년퇴직자 보상금 경정(300,000원X4명)-기정(300,000원X3명) = 300 ◎환경미화원 및 환경기동반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 100,000원X4명 = 4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20 경상적경비	36,713	38,793	△2,080	
	201 일반운영비	35,713	36,313	△600	
		35,713	36,313	△600	01 일반운영비 ◎청소 및 정화조 관련 홍보물 제작 경정(2,000,000원X1식)-기정(2,600,000원X1식) = △600
	301 일반보상금	1,000	2,480	△1,480	
		1,000	2,480	△1,480	12 기타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경정(1,000,000원X1식)-기정(2,000,000원X1식) = △1,000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전력사용 보상금 경정(0)-기정(10,000원X4개소X12월) = △480
	200 사업예산	118,300	124,300	△6,000	
	220 자체사업	118,300	124,300	△6,000	
	206 재료비	27,300	33,300	△6,000	◎대형(가로)청소차 청소용 물품구입비 △6,000 ●중앙브러쉬 경정(200,000원X0.5개X4대X10월)-기정(200,000원X1개X4대X10월) = △4,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측면브러쉬 경정(100,000원X3.5개X4대X10월)-기정(100,000원X4개X4대X10월) = △2,000
	2235 재활용관리	1,700	3,000	△1,300	
	100 경상예산	1,700	3,000	△1,300	
	120 경상적경비	1,700	3,000	△1,300	
	201 일반운영비	500	1,000	△500	
		500	1,000	△500	01 일반운영비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물 제작 경정(500,000원)-기정(1,000,000원) = △500
	301 일반보상금	1,200	2,000	△800	
		1,200	2,000	△800	12 기타보상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보상금 경정(10,000원X8,000개소X1.5%)-기정(10,000원X8,000개소X2.5%) = △800
	2250 녹지공원	2,472,543	2,277,176	195,367	
	2251 녹지공원관리	2,472,543	2,277,176	195,367	
	100 경상예산	1,548,412	1,554,485	△6,073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20 경상적경비	170,434	176,507	△6,073	
	201 일반운영비	170,434	176,507	△6,073	
		170,434	176,507	△6,073	01 일반운영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보안등, 분수대, 화장실 전기요금 △4,813 ●기본요금 경정(20,314,000원)-기정(21,384,000원) = △1,070 ●사용요금 경정(71,101,000원)-기정(74,844,000원) = △3,743 ◎공원화장실, 분수대, 음수대 상하수도요금 △1,260 ●상수도 경정(16,758,000원)-기정(17,640,000원) = △882 ●하수도 경정(7,182,000원)-기정(7,560,000원) = △378
	200 사업예산	924,131	722,691	201,440	
	220 자체사업	924,131	722,691	201,440	
	401 시설비및부 대비	805,552	604,112	201,440	
		799,400	599,400	200,000	01 시설비

장:(2000)사회개발비

관:(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2250)녹지공원

세항:(2251)녹지공원관리

세세항:(220)자체사업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 200,000,000원X1식 = 200,000
		6,152	4,712	1,440	03 시설부대비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 200,000,000원X0.72/100 = 1,440
2300	사회보장비	46,984,335	43,737,556	3,246,779	[국 24,079,385 도 7,763,448 시 14,950,618] [분 190,884 교 0]
2310	사회복지	3,465,923	3,312,805	153,118	[국 1,988,749 도 631,991 시 845,183] [분 0 교 0]
2311	복지행정	58,042	44,924	13,118	
100	경상예산	58,042	44,924	13,118	
120	경상적경비	58,042	44,924	13,118	
	201 일반운영비	28,922	22,104	6,818	
		28,922	22,104	6,818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5,976 ●일반수용비 경정(12,240,000원X95/100)-기정(8,640,000원) = 2,988 ●급량비 경정(12,240,000원X95/100)-기정(8,640,000원) = 2,988 ◎복사기 임차료 경정(2,520,000원)-기정(1,440,000원) = 1,08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목				
					◎안내문 및 생활안정자금 고지서 발송 △238 ●등기 경정(1,919,520원)-기정(2,064,000원) = △145 ●일반 경정(1,227,600원)-기정(1,320,000원) = △93
	202 여비	21,420	15,120	6,300	
		21,420	15,120	6,300	01 국내여비 ◎사회복지 업무 추진여비 경정(21,420,000원)-기정(15,120,000원) = 6,300
2312	장애인복지	3,407,881	3,267,881	140,000	[국 1,988,749 도 631,991 시 787,141] [분 교 0]
200	사업예산	3,407,881	3,267,881	140,000	[국 1,988,749 도 631,991 시 787,141] [분 교 0]
210	보조사업	3,407,881	3,267,881	140,000	[국 1,988,749 도 631,991 시 787,141] [분 교 0]
	301 일반보상금	3,407,881	3,267,881	140,000	
		3,407,881	3,267,881	140,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경정(172,569,000원)-기정(72,569,000원) = 10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8,055 - 58,055 = 0 (시) 114,514 - 14,514 = 100,000 ◎도비 장애수당 경정(456,444,000원)- 기정(416,444,000원) = 40,0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	[경정] 208,222 - [기정] 208,222 = [증감] 0	
					(시)	248,222 - 208,222 = 40,000	
2320	생활보호	21,047,365	20,722,659	324,706	[국 16,304,614 [분 0	도 2,217,527 교 0	시 2,525,224 0]
2321	저소득주민보호	21,047,365	20,722,659	324,706	[국 16,304,614 [분 0	도 2,217,527 교 0	시 2,525,224 0]
200	사업예산	21,031,365	20,706,659	324,706	[국 16,304,614 [분 0	도 2,217,527 교 0	시 2,509,224 0]
210	보조사업	21,031,365	20,706,659	324,706	[국 16,304,614 [분 0	도 2,217,527 교 0	시 2,509,224 0]
	301 일반보상금	20,238,956	19,947,259	291,697			
		20,238,956	19,947,259	291,697	01 사회복지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경정(19,559,259,000원)-기정(19,294,259,000원) = 265,000		
					(국)	[경정] 15,435,407 - [기정] 15,435,407 = [증감] 0	
					(도)	1,929,426 - 1,929,426 = 0	
					(시)	2,194,426 - 1,929,426 = 265,000	
					◎근로소득공제사업비		
					경정(188,697,000원)-기정(162,000,000원) = 26,697		
					(국)	[경정] 129,600 - [기정] 129,600 = [증감] 0	
					(도)	16,200 - 16,200 = 0	
					(시)	42,897 - 16,200 = 26,697	
	401 시설비및부 대비	768,409	735,400	33,009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768,409	735,400	33,009	01 시설비 ◎자활근로사업비 경정(673,009,000원)-기정(640,000,000원) = 33,009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38,407 - 512,000 = 26,407 (도) 67,301 - 64,000 = 3,301 (시) 67,301 - 64,000 = 3,301
2330	가정복지	22,471,047	19,702,092	2,768,955	[국 5,786,022 도 4,913,930 시 11,580,211] [분 190,884 교 0]
2331	가정정책	747,450	534,982	212,468	[국 268,711 도 154,251 시 324,488]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732,200	519,732	212,468	[국 268,711 도 154,251 시 309,238]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732,200	519,732	212,468	[국 268,711 도 154,251 시 309,238] [분 0 교 0]
	301 일반보상금	732,200	519,732	212,468	
		732,200	519,732	212,468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정(싱글맘,싱글팍) 지원 경정(432,000,000원)-기정(335,887,000원) = 96,113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68,711 - 268,711 = 0 (도) 33,588 - 33,588 = 0 (시) 129,701 - 33,588 = 96,113 ◎저소득 한부모가정(싱글맘,싱글팍) 지원(도비 사업) 경정(288,000,000원)-기정(172,445,000원) = 115,555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	[경 정] 114,963	-	[기 정] 114,963	=	[증 감] 0
					(시)	173,037	-	57,482	=	115,555
					◎저소득 한부모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 경정(4,200,000원)-기정(3,400,000원) = 800					
					(도)	[경 정] 1,700	-	[기 정] 1,700	=	[증 감] 0
					(시)	2,500	-	1,700	=	800
2332	노인복지	6,084,360	6,081,960	2,400	[국 780,189 도 897,876 시 4,350,105]	[분 56,190 교 0]				
100	경상예산	403,225	400,825	2,400						
120	경상적경비	403,225	400,825	2,400						
	301 일반보상금	336,960	334,560	2,400						
		336,960	334,560	2,400	01 사회복지적수혜금 ◎장수수당 경정(20,000원X1,350명X12월)-기정(20,000원X1,340명X12월) = 2,400					
2333	아동복지	1,206,939	1,165,486	41,453	[국 174,300 도 470,132 시 427,813]	[분 134,694 교 0]				
200	사업예산	1,198,364	1,156,911	41,453	[국 174,300 도 470,132 시 419,238]	[분 134,694 교 0]				
210	보조사업	1,196,764	1,155,311	41,453	[국 174,300 도 470,132 시 417,638]	[분 134,694 교 0]				
	301 일반보상금	860,764	819,311	41,453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	[경 정] 421,500	-	[기 정] 421,500	=	[증 감] 0
					(시)	1,101,000	-	421,500	=	679,500
	307 민간이전	5,892,678	5,155,244	737,434						
		5,892,678	5,155,244	737,434	02 민간경상보조					
					◎영아전담시설종사자 인건비					
						경정(504,166,000원)-기정(427,288,000원) = 76,878				
					(국)	[경 정] 213,644	-	[기 정] 213,644	=	[증 감] 0
					(도)	106,822	-	106,822	=	0
					(시)	183,700	-	106,822	=	76,878
					◎민간영아반 종사자 인건비					
						경정(3,483,222,000원)-기정(2,876,296,000원) = 606,926				
					(국)	[경 정] 1,438,148	-	[기 정] 1,438,148	=	[증 감] 0
					(도)	719,074	-	719,074	=	0
					(시)	1,326,000	-	719,074	=	606,926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경정(165,000,000원)-기정(162,240,000원) = 2,760				
					(국)	[경 정] 81,120	-	[기 정] 81,120	=	[증 감] 0
					(도)	40,560	-	40,560	=	0
					(시)	43,320	-	40,560	=	2,760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경정(35,000,000원)-기정(32,200,000원) = 2,800				
					(도)	[경 정] 16,100	-	[기 정] 16,100	=	[증 감] 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시) 18,900 - 16,100 = 2,800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경정(36,610,000원)-기정(20,220,000원) = 16,39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10,110 - 10,110 = 0
					(시) 26,500 - 10,110 = 16,390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경정(1,200,000,000원)-기정(1,168,320,000원) = 31,68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584,160 - 584,160 = 0
					(시) 615,840 - 584,160 = 31,680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73,824	154,427	19,397	[국 810 도 0 시 173,014] [분 0 교 0]
2410	주택사업	106,575	107,061	△486	[국 810 도 0 시 105,765] [분 0 교 0]
2411	건축행정	83,765	85,061	△1,296	
100	경상예산	83,765	85,061	△1,296	
120	경상적경비	68,868	70,164	△1,296	
	201 일반운영비	39,488	40,784	△1,296	
		39,488	40,784	△1,296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296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일반수용비 경정(40,000원X27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7명X12월) = △648
					●급량비 경정(40,000원X27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7명X12월) = △648
2412	건축지도	22,810	22,000	810	[국 810 도 0 시 22,000]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810	0	810	[국 810 도 0 시 0]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810	0	810	[국 810 도 0 시 0] [분 0 교 0]
	201 일반운영비	310	0	310	
		310	0	310	01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단속급량비 = 310 (국) 310
	202 여비	500	0	500	
		500	0	500	01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 500 (국) 500
2430	도시개발	67,249	47,366	19,883	
2432	지적관리	67,249	47,366	19,883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00 경상예산	32,569	24,686	7,883	
	110 인건비	20,181	11,902	8,279	
	101 인건비	20,181	11,902	8,279	
		20,181	11,902	8,279	10 일시사역인부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조사원 8,279 ●기본급 31,000원X7명X30일 = 6,510 ●연차수당 31,000원X7명X1일 = 217 ●주휴수당 31,000원X7명X4일 = 868 ●고용보험료 7,595,000원X13/1,000 = 99 ●산재보험료 7,595,000원X8/1,000 = 61 ●건강보험료 7,595,000원X23.85/1,000 = 182 ●국민연금 7,595,000원X45/1,000 = 342
	120 경상적경비	12,388	12,784	△396	
	201 일반운영비	7,388	7,784	△396	
		7,388	7,784	△396	01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유인 △396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플로터 잉크 경정{(88,000원X3색)+(66,000원X2색)}X3회 - 기정{(88,000원X3색)+(66,000원X2색)}X4회 = △396
	200 사업예산	34,680	22,680	12,000	
	220 자체사업	34,680	22,680	12,000	
	401 시설비및부 대비	34,180	22,180	12,000	
		34,180	22,180	12,000	01 시설비 ◎새주소부여사업 12,000 ●건물번호판제작 경정(12,000원X2,000개)-기정(12,000원X1,000개) = 12,000
	세 출 합 계	67,181,944	61,141,322	6,040,622	
	일 반 회 계 세출총계	680,440,838	560,141,038	120,299,8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000	사회개발비	31,430,461	29,490,668	1,939,793	[국 12,985,739 도 4,837,251 시 13,479,724] [분 127,747 교 0]
2100	교육및문화비	158,555	163,535	△4,980	[국 9,749 도 28,600 시 120,206] [분 0 교 0]
2130	체육청소년	118,807	123,787	△4,980	[국 9,749 도 28,600 시 80,458] [분 0 교 0]
2133	청소년육성	101,558	106,538	△4,980	[국 9,749 도 28,600 시 63,209]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100,358	105,338	△4,980	[국 9,749 도 28,600 시 62,009]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95,358	100,338	△4,980	[국 9,749 도 28,600 시 57,009] [분 0 교 0]
	307 민간이전	95,358	100,338	△4,980	
		95,358	100,338	△4,980	05 민간위탁금 ◎청소년공부방 운영(국비) 경정(16,760,000원)-기정(15,000,000원) = 1,76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000 - 5,000 = 0 (도) 1,760 - 0 = 1,760 (시) 10,000 - 10,000 = 0 ◎청소년공부방 운영(도비) 경정(69,100,000원)-기정(75,840,000원) = △6,74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26,840 - 28,340 = △1,500 (시) 42,260 - 47,500 = △5,24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3,416,601	3,350,876	65,725	[국 0 도 300 시 3,416,301] [분 0 교 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국	도	시	교	초
2230	환경보전	2,143,642	2,249,627	△105,985	[국 0 [분 0	도 300 0	시 2,143,342 0]		
2231	환경관리	178,694	179,942	△1,248	[국 0 [분 0	도 300 0	시 178,394 0]		
100	경상예산	178,094	179,342	△1,248					
120	경상적경비	147,232	148,480	△1,248					
	201 일반운영비	110,162	111,410	△1,248					
		110,162	111,410	△1,248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248	
					●일반수용비				
					경정(40,000원X26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6명X12월)			=	△624
					●급량비				
					경정(40,000원X26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6명X12월)			=	△624
2234	청소관리	1,960,848	2,065,585	△104,737					
100	경상예산	1,898,108	2,002,845	△104,737					
110	인건비	1,843,808	1,948,065	△104,257					
	101 인건비	1,843,808	1,948,065	△104,257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843,808	1,948,065	△ 104,257	09 일용인부임
					◎가로환경미화원
					△87,509
					●기본급
					경정(714,000원X39명X12월)-기정(714,000원X42명X12월) =
					△25,704
					●상여금
					△11,218
					- 기말수당
					경정(460,512,000원X2/12)-기정(495,936,000원X2/12) =
					△5,904
					- 정근수당
					경정(460,512,000원X1.8/12)-기정(495,936,000원X1.8/12) =
					△5,314
					●가족수당
					△2,160
					- 배우자
					경정(30,000원X39명X12월)-기정(30,000원X42명X12월) =
					△1,080
					- 존.비속
					경정(20,000원X39명X12월X1.5)-기정(20,000원X42명X12월X1.5) =
					△1,080
					●특수업무수당
					경정(90,000원X39명X12월)-기정(90,000원X42명X12월) =
					△3,24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장려수당 경정(70,000원X39명X12월)-기정(70,000원X42명X12월) = △2,520 ●근속가산금 경정(23,100원X39명X13년X12월)-기정(23,100원X42명X13년X12월) = △10,811 ●시간외수당 경정(13,000원X39명X365일)-기정(13,000원X42명X365일) = △14,235 ●휴일근무수당 경정(52,200원X39명X3일X12월)-기정(52,200원X42명X3일X12월) = △5,638 ●연차수당 경정(34,850원X39명X20일)-경정(34,850원X42명X20일) = △2,091 ●자녀학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경정(47,700원X39명X0.19X4회)-기정(47,700원X42명X0.19X4회) = △109 - 고등학교 경정(381,150원X39명X0.15X4회)-기정(381,150원X42명X0.15X4회) = △687 ●위해보호수당 경정(100,000원X39명X12월)-기정(100,000원X42명X12월) = △3,6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 위생수당(목욕료) 경정(90,000원X39명X12월)-기정(90,000원X42명X12월) = △3,240
					● 야간근로수당 경정(2,060원X39명X365일)-기정(2,060원X42명X365일) = △2,256
					◎ 복리후생비 △25,848
					● 정액급식비 경정(90,000원X39명X12월)-기정(90,000원X42명X12월) = △3,240
					● 교통비 경정(120,000원X39명X12월)-기정(120,000원X42명X12월) = △4,320
					● 조식비 경정(70,000원X39명X12월)-기정(70,000원X42명X12월) = △2,520
					● 가계보조비 경정(110,000원X39명X12월)-기정(110,000원X42명X12월) = △3,960
					● 체력단련비 경정(460,512,000원X2.5/12)-기정(495,936,000원X2.5/12) = △7,380
					● 명절휴가비 경정(460,512,000원X1.5/12)-기정(495,936,000원X1.5/12) = △4,428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환경기동반 인부임 9,100 ●시간외 근무수당 {경정(13,000원X7명X365일)+(13,000원X7명X100일)} -기정(13,000원X7명X365일) = 9,100
	120 경상적경비	54,300	54,780	△480	
	301 일반보상금	35,000	35,480	△480	
		5,000	5,480	△480	12 기타보상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전력사용 보상금 경정(0원)-기정(10,000원X4개소X12월) = △480
	2250 녹지공원	1,255,543	1,083,833	171,710	
	2251 녹지공원관리	1,255,543	1,083,833	171,710	
	200 사업예산	650,505	478,795	171,710	
	220 자체사업	650,505	478,795	171,710	
	401 시설비및부 대비	525,182	353,472	171,710	
		519,920	349,920	170,000	01 시설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소사본3동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2,000,000원X15점 = 30,000 ◎소사본3동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 20,000,000원X2점 = 40,000 ◎소사본3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 10,000,000원X3개소 = 30,000 ◎정명 어린이공원 화장실 교체 70,000,000원X1개소 = 70,000
		5,262	3,552	1,710	03 시설부대비 ◎소사본3동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30,000,000원X1.08/100 = 324 ◎소사본3동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 40,000,000원X1.08/100 = 432 ◎소사본3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 30,000,000원X1.08/100 = 324 ◎정명 어린이공원 화장실 교체 70,000,000원X0.90/100 = 630
2300	사회보장비	27,731,972	25,866,974	1,864,998	[국 12,974,979 도 4,808,351 시 9,820,895] [분 127,747 교 0]
2310	사회복지	1,920,794	1,916,134	4,660	[국 1,088,995 도 367,858 시 463,941] [분 0 교 0]
2311	복지행정	41,320	36,660	4,66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00 경상예산	41,320	36,660	4,660	
	120 경상적경비	41,320	36,660	4,660	
	201 일반운영비	19,620	18,060	1,560	
		19,620	18,060	1,560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560 ●일반수용비 경정(8,400,000원X95/100)-기정(7,200,000원) = 780 ●급량비 경정(8,400,000원X95/100)-기정(7,200,000원) = 780
	202 여비	14,700	12,600	2,100	
		14,700	12,600	2,100	01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 경정(14,700,000원)-기정(12,600,000원) = 2,100
	203 업무추진비	7,000	6,000	1,000	
		4,000	3,000	1,0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정(4,000,000원)-기정(3,000,000원) = 1,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320	생활보호	10,495,282	10,203,728	291,554	[국 7,987,474 도 1,129,494 시 1,378,314] [분 0 교 0 0]
2321	저소득주민보호	10,495,282	10,203,728	291,554	[국 7,987,474 도 1,129,494 시 1,378,314] [분 0 교 0 0]
200	사업예산	10,486,462	10,194,908	291,554	[국 7,987,474 도 1,129,494 시 1,369,494] [분 0 교 0 0]
210	보조사업	10,486,462	10,194,908	291,554	[국 7,987,474 도 1,129,494 시 1,369,494] [분 0 교 0 0]
	301 일반보상금	9,890,658	9,665,658	225,000	
		9,890,658	9,665,658	225,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경정(9,462,978,000원)-기정(9,262,978,000원) = 20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410,382 - 7,410,382 = 0 (도) 926,298 - 926,298 = 0 (시) 1,126,298 - 926,298 = 200,000 ◎근로소득 공제사업비 경정(133,600,000원)-기정(93,600,000원) = 4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4,880 - 74,880 = 0 (도) 9,360 - 9,360 = 0 (시) 49,360 - 9,360 = 40,000 ◎긴급복지지원사업 경정(87,080,000원)-기정(102,080,000원) = △15,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69,664 - 81,600 = △11,936 (도) 8,708 - 10,240 = △1,532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시) 8,708 - 10,240 = △1,532
	401 시설비및부 대비	569,604	503,050	66,554	
		569,604	503,050	66,554	01 시설비 ◎자활근로사업비 경정(514,484,000원)-기정(447,930,000원) = 66,554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11,588 - 358,344 = 53,244 (도) 51,448 - 44,793 = 6,655 (시) 51,448 - 44,793 = 6,655
2330	가정복지	15,315,896	13,747,112	1,568,784	[국 3,898,510 도 3,310,999 시 7,978,640] [분 127,747 교 0]
2331	가정정책	369,289	342,589	26,700	[국 171,000 도 98,784 시 99,505]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358,689	331,989	26,700	[국 171,000 도 98,784 시 88,905]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358,689	331,989	26,700	[국 171,000 도 98,784 시 88,905] [분 0 교 0]
	301 일반보상금	358,689	331,989	26,700	
		358,689	331,989	26,7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정(싱글맘, 싱글팍)지원(도비 사업) 경정(134,739,000원)-기정(109,739,000원) = 25,0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73,159 - 73,159 = 0 (시) 61,580 - 36,580 = 25,000

장:(2000)사회개발비

관:(2300)사회보장비

항:(2330)가정복지

세항:(2331)가정정책

세세항:(210)보조사업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경정(4,200,000원)-기정(2,500,000원) = 1,7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1,250 - 1,250 = 0 (시) 2,950 - 1,250 = 1,700
	2332 노인복지	4,235,347	4,225,477	9,870	[국 502,788 도 562,328 시 3,135,342] [분 34,889 교 0]
	100 경상예산	511,300	510,900	400	
	120 경상적경비	511,300	510,900	400	
	201 일반운영비	251,300	250,900	400	
		251,300	250,900	400	01 일반운영비 ◎노인교실 강사수당 경정(50,000원X4회X1개소X12월)-기정(50,000원X2명X5일X4회) = 400
	200 사업예산	3,724,047	3,714,577	9,470	[국 502,788 도 562,328 시 2,624,042] [분 34,889 교 0]
	210 보조사업	3,672,897	3,664,327	8,570	[국 502,788 도 562,328 시 2,572,892] [분 34,889 교 0]
	301 일반보상금	3,553,987	3,545,417	8,570	
		3,553,221	3,544,651	8,57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정(304,660,000원)-기정(296,090,000원) = 8,57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정]	[기정]	[증감]
					(도) 28,268 -	28,268 =	0
					(시) 241,503 -	232,933 =	8,570
					(분) 34,889 -	34,889 =	0
	220 자체사업	51,150	50,250	900			
	401 시설비및부 대비	48,900	48,000	900			
		48,900	48,000	900	01 시설비		
					◎경로당 실내장식물 및 물품 방역처리비		
					300,000원X1식X3개소 =		900
	2333 아동복지	1,275,712	1,121,642	154,070	[국 151,560 도 346,056 시 685,238] [분 92,858 교 0]		
	200 사업예산	1,265,612	1,111,542	154,070	[국 151,560 도 346,056 시 675,138] [분 92,858 교 0]		
	210 보조사업	1,258,712	1,104,642	154,070	[국 151,560 도 346,056 시 668,238] [분 92,858 교 0]		
	301 일반보상금	970,712	816,642	154,070			
		970,712	816,642	154,07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		154,070
					(도)		31,412
					(시)		122,658
					(분)		0
					●결식아동 지원(미취학)		
					경정(101,178,000원)-기정(66,476,000원) =		34,702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산	출	기
					[경정]	[기정]	[증감]
					(도) 25,294 -	30,660 =	△5,366
					(시) 75,884 -	35,816 =	40,068
					●결식아동 지원(취학)		
					경정(619,428,000원)-기정(536,718,000원) =		82,710
					[경정]	[기정]	[증감]
					(도) 154,857 -	154,737 =	120
					(시) 429,798 -	347,208 =	82,590
					(분) 34,773 -	34,773 =	0
					●학기중 토,일 공휴일 급식지원		= 36,658
					(도)		36,658
2334	보육정책	9,435,548	8,057,404	1,378,144	[국 3,073,162	도 2,303,831	시 4,058,555]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9,085,148	7,707,004	1,378,144	[국 3,073,162	도 2,303,831	시 3,708,155]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9,085,148	7,707,004	1,378,144	[국 3,073,162	도 2,303,831	시 3,708,155]
					[분 0	교 0]	
	301 일반보상금	5,684,620	4,758,120	926,500			
		5,660,100	4,733,600	926,5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보육료지원		
					경정(4,970,100,000원)-기정(4,022,000,000원) =		948,100
					[경정]	[기정]	[증감]
					(국) 2,011,000 -	2,011,000 =	0
					(도) 1,005,500 -	1,005,500 =	0
					(시) 1,953,600 -	1,005,500 =	948,100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료 지원		
					경정(0원)-기정(21,600,000원) =		△21,6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 정]	[기 정]	[증 감]
					(도)	0 - 10,800 =	△10,800
					(시)	0 - 10,800 =	△10,800
	307 민간이전	3,400,528	2,948,884	451,644			
		3,400,528	2,948,884	451,644	02 민간경상보조		
					◎민간영아반 종사자 인건비		
					경정(2,289,828,000원)-기정(1,849,504,000원)	=	440,324
					(국)	[경 정] 924,752 - [기 정] 924,752 =	[증 감] 0
					(도)	462,376 - 462,376 =	0
					(시)	902,700 - 462,376 =	440,324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경정(117,300,000원)-기정(101,400,000원)	=	15,900
					(국)	[경 정] 50,700 - [기 정] 50,700 =	[증 감] 0
					(도)	25,350 - 25,350 =	0
					(시)	41,250 - 25,350 =	15,900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경정(15,000,000원)-기정(9,480,000원)	=	5,520
					(도)	[경 정] 7,500 - [기 정] 4,740 =	[증 감] 2,760
					(시)	7,500 - 4,740 =	2,760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경정(15,000,000원)-기정(25,100,000원)	=	△10,100
					(국)	[경 정] 7,500 - [기 정] 12,550 =	[증 감] △5,050
					(도)	3,750 - 6,275 =	△2,525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시)	도	교	시		
						3,750	-	6,275	=	△2,525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23,333	109,283	14,050	[국 [분	1,011 0	도 0	0 교	시 0]	122,322]
2410	주택사업	68,386	68,911	△525	[국 [분	1,011 0	도 0	0 교	시 0]	67,375]
2411	건축행정	50,515	51,811	△1,296						
100	경상예산	50,515	51,811	△1,296						
120	경상적경비	43,064	44,360	△1,296						
	201 일반운영비	21,744	23,040	△1,296						
		21,744	23,040	△1,296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864
					●일반수용비					
					경정(40,000원X18명X12월X95/100) - 기정(40,000원X18명X12월)				=	△432
					●급량비					
					경정(40,000원X18명X12월X95/100) - 기정(40,000원X18명X12월)				=	△432
					◎건축민원 우편물					△432
					●등기	경정(3,096,000원) - 기정(3,440,000원)			=	△344
					●일반	경정(792,000원) - 기정(880,000원)			=	△88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다른 여비 = 700 (국) 700
2430	도시개발	54,947	40,372	14,575	
2432	지적관리	54,947	40,372	14,575	
100	경상예산	28,947	26,772	2,175	
110	인건비	17,817	11,902	5,915	
	101 인건비	17,817	11,902	5,915	
		17,817	11,902	5,915	10 일시사역인부임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조사원 5,425 ●인부임 31,000원X5명X30일 = 4,650 ●연차수당 31,000원X5명X1일 = 155 ●주휴수당 31,000원X5명X4일 = 620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조사원 4대보험 490 ●고용보험료 5,425,000원X13/1,000 = 71 ●산재보험료 5,425,000원X8/1,000 = 44 ●건강보험료 5,425,000원X23.85/1,000 = 13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401 시설비및부 대비	26,000	13,600	12,400	
		26,000	13,600	12,400	01 시설비 ◎새주소 부여사업 12,400 ●건물번호판 제작 경정(12,000원X1,500개)-기정(12,000원X300개) = 14,400 ●도로명판 제작 경정(400,000원X20개)-기정(400,000원X25개) = △2,000
세출합계		42,575,283	36,842,563	5,732,720	
일반회계세출총계		680,440,838	560,141,038	120,299,8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000	사회개발비	31,341,192	29,703,698	1,637,494	[국 13,623,150 도 5,136,849 시 12,451,366] [분 129,827 교 0]
2100	교육및문화비	96,687	93,338	3,349	[국 4,749 도 6,960 시 84,978] [분 0 교 0]
2120	문화예술	31,849	29,600	2,249	
2122	문예진흥	23,419	29,600	△6,181	
100	경상예산	23,419	29,600	△6,181	
120	경상적경비	23,419	29,600	△6,181	
	201 일반운영비	1,419	1,600	△181	
		1,419	1,600	△181	01 일반운영비 ◎연 만들기 교실운영 강사수당 경정(1,419,000원)-기정(1,600,000원) = △181
	307 민간이전	16,000	22,000	△6,000	
		16,000	22,000	△6,000	04 민간행사보조 ◎지역단위 문화축제 △6,000 ●가치울축제(성곡동) 경정(0원)-기정(3,000,000원) = △3,000 ●한마음축제(오정동) 경정(0원)-기정(3,000,000원) = △3,0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124 문화시설	8,430	0	8,430	
	100 경상예산	8,430	0	8,430	
	120 경상적경비	8,430	0	8,430	
		8,430	0	8,430	01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8,430	0	8,430	◎은데미공원 야외음악당 운영 3,430 ●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 380,000원X7월 = 2,660 ●무인전자시스템 용역료 110,000원X7월 = 770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 5,000,000원X1식 = 5,000
	2130 체육청소년	64,838	63,738	1,100	[국 4,749 도 6,960 시 53,129] [분 0 교 0]
	2131 체육진흥	20,260	20,440	△180	
	100 경상예산	20,260	20,440	△180	
	120 경상적경비	20,260	20,440	△180	
		10,760	10,440	320	
	201 일반운영비	10,760	10,440	320	01 일반운영비

장:(2000)사회개발비

관:(2100)교육및문화비

항:(2130)체육청소년

세항:(2131)체육진흥

세세항:(120)경상적경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유소년축구 강사수당 경정(20,000원X12시간X2개소X12월)-기정(20,000원X12시간X2개소X10월) = 960 ◎유명 프로축구선수 초청 강연회 경정(0원)-기정(80,000원X2시간X4회) = △640
	307 민간이전	9,500	10,000	△500	
		2,500	3,000	△500	02 민간경상보조 ◎여성축구단 운영 경정(2,500,000원X1개구단)-기정(3,000,000원X1개구단) = △500
2133	청소년육성	44,578	43,298	1,280	[국 4,749 도 6,960 시 32,869]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44,578	43,298	1,280	[국 4,749 도 6,960 시 32,869]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30,178	31,898	△1,720	[국 4,749 도 6,960 시 18,469] [분 0 교 0]
	307 민간이전	30,178	31,898	△1,720	
		30,178	31,898	△1,720	05 민간위탁금 ◎청소년공부방 운영(도비) 경정(20,680,000원)-기정(22,400,000원) = △1,72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6,960 - 9,700 = △2,740 (시) 13,720 - 12,700 = 1,02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20 자체사업	14,400	11,400	3,000	
	307 민간이전	14,400	11,400	3,000	
		14,400	11,400	3,000	05 민간위탁금 ◎오정동 성화교회 청소년공부방 운영 경정(14,400,000원)-기정(11,400,000원) = 3,00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비	3,574,650	3,527,176	47,474	[국 0 도 300 시 3,574,350] [분 0 교 0]
	2220 위생	18,800	16,280	2,520	
	2221 위생관리	18,800	16,280	2,520	
	100 경상예산	18,080	15,560	2,520	
	120 경상적경비	18,080	15,560	2,520	
	201 일반운영비	9,000	6,480	2,520	
		9,000	6,480	2,520	01 일반운영비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개별계량기 설치업소) 경정(30,000원X25개소X12월) - 기정(30,000원X18개소X12월) = 2,520
2230	환경보전	2,318,069	2,281,622	36,447	[국 0 도 300 시 2,317,769] [분 0 교 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231	환경관리	187,837	189,037	△1,200	[국 0 도 300 시 187,537]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187,237	188,437	△1,200	
120	경상적경비	159,460	160,660	△1,200	
	201 일반운영비	127,130	128,330	△1,200	
		127,130	128,330	△1,200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1,200 ●일반수용비 경정(40,000원X25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5명X12월) = △600 ●급량비 경정(40,000원X25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25명X12월) = △600
2234	청소관리	2,127,892	2,090,245	37,647	
100	경상예산	2,033,656	1,996,009	37,647	
110	인건비	2,010,826	1,970,799	40,027	
	101 인건비	2,010,826	1,970,799	40,027	
		2,010,826	1,970,799	40,027	09 일용인부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경정(1,831,160,000원X38/1,000)-기정(1,628,100,000원X35/1,000) = 12,601
					◎가로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 경정(1,831,160,000원X17.5/1,000)-기정(1,628,100,000원X13/1,000) = 10,880
					◎환경기동반 급여(7명) 9,100
					●시간외근무수당 경정(42,315,000원)-기정(33,215,000원) = 9,100
					◎환경기동반 정년퇴직자 보상금 300,000원X3명 = 900
					◎환경기동반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 100,000원X3명 = 300
					◎환경기동반 산재보험료 경정(305,430,000원X38/1,000)-기정(231,782,000원X35/1,000) = 3,494
					◎환경기동반 고용보험료 경정(305,430,000원X17.5/1,000)-기정(231,782,000원X13/1,000) = 2,332
					◎환경기동반 피복비 420
					●작업복 경정(30,000원X7명X3착)-기정(30,000원X7명X1착) = 420
120	경상적경비	22,830	25,210	△2,38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301 일반보상금	2,000	3,120	△1,120	
		2,000	3,120	△1,120	12 기타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경정(2,000,000원X1식)-기정(3,000,000원X1식) = △1,000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전력사용 보상금 경정(0원)-기정(5,000원X2개소X12월) = △120
	307 민간이전	2,940	4,200	△1,260	
		2,940	4,200	△1,260	02 민간경상보조 ◎골목길 청소서포터(경로당 어르신) 근무복 경정(21,000원X10명X2개경로당X7개동) -기정(30,000원X10명X2개경로당X7개동) = △1,260
2250	녹지공원	1,237,781	1,229,274	8,507	
2251	녹지공원관리	1,237,781	1,229,274	8,507	
100	경상예산	812,838	814,331	△1,493	
110	인건비	755,036	751,709	3,327	
	101 인건비	755,036	751,709	3,327	
		502,282	500,859	1,423	09 일용인부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공원관리원 산재보험료 경정(474,253,000원X38/1,000)-기정(474,253,000원X35/1,000) = 1,423
		252,754	250,850	1,904	10 일시사역인부임 ◎도시녹화인부 4대보험 952 ●산재보험료 경정(112,447,000원X42/1,000)-기정(112,447,000원X35/1,000) = 788 ●건강보험료 경정(112,447,000원X23.85/1,000)-기정(112,447,000원X22.4/1,000) = 164 ◎가로수,도심지나무심기 인부임 4대보험 952 ●산재보험료 경정(112,447,000원X42/1,000)-기정(112,447,000원X35/1,000) = 788 ●건강보험료 경정(112,447,000원X23.85/1,000)-기정(112,447,000원X22.4/1,000) = 164
	120 경상적경비	57,802	62,622	△4,820	
		57,802	62,622	△4,820	201 일반운영비
		57,802	62,622	△4,820	01 일반운영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공원,산림내 화장실 인분수거료 △360 ●자연발효화장실 인분수거 용역 경정(480,000X6개소)-기정(540,000원X6개소) = △360 ◎공원,분수대,산림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3,960 ●전기요금 △2,160 - 기본요금 경정(4,968,000원)-기정(5,616,000원) = △648 - 사용요금 경정(11,592,000원)-기정(13,104,000원) = △1,512 ●상하수도요금 △1,800 - 상수도 경정(700원X5톤X12개소X30일X12월)-기정(700원X5톤X13개소X30일X12월) = △1,260 - 하수도 경정(300원X5톤X12개소X30일X12월)-기정(300원X5톤X13개소X30일X12월) = △540 ◎중장비 임차료 경정(500,000원X9일)-기정(500,000원X10일) = △500
400	예비비등	10,000	0	10,000	
420	기타	10,000	0	10,0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305 배상금등	10,000	0	10,000	◎도당산내 체육시설물설치 토지사용 배상금 = 10,000
2300	사회보장비	27,547,430	25,972,701	1,574,729	[국 13,617,391 도 5,129,589 시 8,670,623] [분 129,827 교 0]
2310	사회복지	1,585,579	1,552,984	32,595	[국 929,661 도 290,457 시 365,461] [분 0 교 0]
2311	복지행정	39,812	36,757	3,055	
100	경상예산	39,812	36,757	3,055	
120	경상적경비	39,812	36,757	3,055	
	201 일반운영비	18,812	18,157	655	
		18,812	18,157	655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800 ●일반수용비 경정(8,000,000원X95/100)-기정(7,200,000원) = 400 ●급량비 경정(8,000,000원X95/100)-기정(7,200,000원) = 400 ◎안내문 및 생활안정고지서 발송용 우편료 △145 ●등기 경정(1,720원X70매X12월X90/100)-기정(1,720원X70매X12월) = △145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02 여비	14,000	12,600	1,400	
		14,000	12,600	1,400	01 국내여비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 경정(14,000,000원)-기정(12,600,000원) = 1,400
	203 업무추진비	7,000	6,000	1,000	
		4,000	3,000	1,0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정(4,000,000원)-기정(3,000,000원) = 1,000
2312 장애인복지		1,545,767	1,516,227	29,540	[국 929,661 도 290,457 시 325,649]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1,545,767	1,516,227	29,540	[국 929,661 도 290,457 시 325,649]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1,545,767	1,516,227	29,540	[국 929,661 도 290,457 시 325,649] [분 0 교 0]
	301 일반보상금	1,545,767	1,516,227	29,540	
		1,545,767	1,516,227	29,54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의료비 경정(54,000,000원)-기정(25,918,000원) = 28,082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0,734 - 20,734 = 0 (시) 33,266 - 5,184 = 28,082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 △ 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장애인자녀교육비 경정(3,800,000원)-기정(2,342,000원) = 1,458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874 - 1,874 = 0 (시) 1,926 - 468 = 1,458
2320	생활보호	11,274,038	10,968,923	305,115	[국 8,615,704 도 1,211,702 시 1,446,632] [분 0 교 0]
2321	저소득주민보호	11,274,038	10,968,923	305,115	[국 8,615,704 도 1,211,702 시 1,446,632]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11,270,478	10,965,363	305,115	[국 8,615,704 도 1,211,702 시 1,443,072]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11,270,478	10,965,363	305,115	[국 8,615,704 도 1,211,702 시 1,443,072] [분 0 교 0]
	301 일반보상금	10,622,388	10,376,018	246,370	
		10,622,388	10,376,018	246,370	01 사회복지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경정(10,138,198,000원)-기정(9,938,198,000원) = 20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950,559 - 7,950,559 = 0 (도) 993,819 - 993,819 = 0 (시) 1,193,820 - 993,820 = 200,000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경정(135,770,000원)-기정(104,400,000원) = 31,37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83,520 - 83,520 = 0 (도) 10,440 - 10,440 = 0 (시) 41,810 - 10,440 = 31,37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정(140,420,000원)-기정(125,420,000원) = 15,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12,336 - 100,400 = 11,936 (도) 14,042 - 12,510 = 1,532 (시) 14,042 - 12,510 = 1,532
	401 시설비및부 대비	586,225	527,480	58,745	
		586,225	527,480	58,745	01 시설비 ◎자활근로사업비 경정(524,745,000원)-기정(466,000,000원) = 58,745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19,797 - 372,800 = 46,997 (도) 52,474 - 46,600 = 5,874 (시) 52,474 - 46,600 = 5,874
2330	가정복지	14,687,813	13,450,794	1,237,019	[국 4,072,026 도 3,627,430 시 6,858,530] [분 129,827 교 0]
2331	가정정책	380,409	338,587	41,822	[국 171,000 도 98,783 시 110,626]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6,200	6,600	△400	
	120 경상적경비	6,200	6,600	△400	
	201 일반운영비	6,200	6,600	△400	
		6,200	6,600	△400	01 일반운영비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 경정(50,000원X2과목X4회X5월)-기정(50,000원X2과목X4회X6월) = △400
200	사업예산	374,209	331,987	42,222	[국 171,000 도 98,783 시 104,426]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374,209	331,987	42,222	[국 171,000 도 98,783 시 104,426] [분 0 교 0]
	301 일반보상금	374,209	331,987	42,222	
		374,209	331,987	42,222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정(싱글맘,싱글팍)지원 경정(227,373,000원)-기정(213,750,000원) = 13,623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71,000 - 171,000 = 0 (도) 21,375 - 21,375 = 0 (시) 34,998 - 21,375 = 13,623 ◎저소득 한부모가정(싱글맘,싱글팍)지원(도비 사업) 경정(138,336,000원)-기정(109,737,000원) = 28,599 [경 정] [기 정] [증 감] (도) 73,158 - 73,158 = 0 (시) 65,178 - 36,579 = 28,599
2332	노인복지	3,324,594	3,289,751	34,843	[국 450,776 도 511,497 시 2,324,761] [분 37,560 교 0]
100	경상예산	154,700	156,400	△1,700	
120	경상적경비	154,700	156,400	△1,7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200 사업예산	1,858,940	1,408,366	450,574	[국 70,080 도 619,920 시 1,076,673] [분 92,267 교 0]
	210 보조사업	1,858,740	1,408,166	450,574	[국 70,080 도 619,920 시 1,076,473] [분 92,267 교 0]
	301 일반보상금	1,570,740	1,144,166	426,574	
		1,570,740	1,144,166	426,574	01 사회복지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경정(23,680,000원)-기정(18,656,000원) = 5,024 [경정] [기정] [증감] (도) 9,328 - 9,328 = 0 (시) 14,352 - 9,328 = 5,024 ◎결식아동 급식 415,700 (도) 30,586 (시) 385,114 (분) 0 ●결식아동 지원(미취학) 경정(116,508,000원)-기정(76,650,000원) = 39,858 [경정] [기정] [증감] (도) 29,127 - 27,786 = 1,341 (시) 87,381 - 48,864 = 38,517 ●결식아동 지원(취학) 경정(768,090,000원)-기정(421,575,000원) = 346,515 [경정] [기정] [증감] (도) 192,022 - 192,104 = △82 (시) 551,995 - 205,398 = 346,597 (분) 24,073 - 24,073 = 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 29,327 (도) 29,32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경정(20,250,000원)-기정(14,400,000원) = 5,85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0,080 - 10,080 = 0 (도) 2,160 - 2,160 = 0 (시) 8,010 - 2,160 = 5,850
	307 민간이전	288,000	264,000	24,000	
		288,000	264,000	24,000	02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경정(120,000,000원)-기정(264,000,000원) = △144,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60,000 - 132,000 = △72,000 (도) 30,000 - 66,000 = △36,000 (시) 30,000 - 66,000 = △36,00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비 사업) = 168,000 (도) 84,000 (시) 84,000
2334	보육정책	9,119,010	8,409,230	709,780	[국 3,380,170 도 2,397,230 시 3,341,610] [분 0 교 0]
	100 경상예산	282,000	249,600	32,400	
	120 경상적경비	282,000	249,600	32,400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 출 기 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도	시	교	시	0	
					(도)	398,600	-	398,600	=	0
					(시)	891,900	-	398,600	=	493,300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경정(16,280,000원)-기정(1,280,000원)			=	15,00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8,140	-	640	=	7,500
					(시)	8,140	-	640	=	7,500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경정(693,000,000원)-기정(602,420,000원)			=	90,580
						[경 정]		[기 정]		[증 감]
					(도)	301,210	-	301,210	=	0
					(시)	391,790	-	301,210	=	90,580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22,425	110,483	11,942	[국	1,010	도	0	시	121,415]
					[분	0	교	0]		
2410	주택사업	76,516	76,370	146	[국	1,010	도	0	시	75,506]
					[분	0	교	0]		
2411	건축행정	59,926	60,790	△864						
100	경상예산	59,926	60,790	△864						
120	경상적경비	45,029	45,893	△864						
	201 일반운영비	24,709	25,573	△864						
		24,709	25,573	△864	01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864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일반수용비 경정(40,000원X18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18명X12월) = △432
					●급량비 경정(40,000원X18명X12월X95/100)-기정(40,000원X18명X12월) = △432
2412	건축지도	16,590	15,580	1,010	[국 1,010 도 0 시 15,580] [분 0 교 0]
200	사업예산	1,010	0	1,010	[국 1,010 도 0 시 0] [분 0 교 0]
210	보조사업	1,010	0	1,010	[국 1,010 도 0 시 0] [분 0 교 0]
	201 일반운영비	310	0	310	
		310	0	310	01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단속급량비 = 310 (국) 310
	202 여비	700	0	700	
		700	0	700	01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 700 (국) 700
2430	도시개발	45,909	34,113	11,796	
2432	지적관리	45,909	34,113	11,796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 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100 경상예산	21,909	22,113	△204	
	110 인건비	10,370	7,935	2,435	
	101 인건비	10,370	7,935	2,435	
		10,370	7,935	2,435	10 일시사역인부임
					◎도로명판 조사원 2,232
					●인부임 31,000원X2명X30일 = 1,860
					●연차수당 31,000원X2명X1월 = 62
					●주휴수당 31,000원X2명X5일 = 310
					◎도로명판 조사원 4대보험 203
					●산재보험료 2,232,000원X8/1,000 = 18
					●고용보험료 2,232,000원X13/1,000 = 30
					●국민연금 2,232,000원X45/1,000 = 101
					●건강보험료 2,232,000원X23.85/1,000 = 54
	120 경상적경비	11,539	14,178	△2,639	
	201 일반운영비	8,539	9,178	△639	
		8,539	9,178	△639	01 일반운영비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토지대장등 제증명 전산발급용지 구입 경정(40,000원X4상자X12월X90/100)-기정(40,000원X4상자X12월) = △192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447
					●개별공시지가통보 우편요금 경정(220원X12,000건X95/100)-기정(220원X12,000건) = △132
					●홍보물 제작 경정(50,000원X4회X10개소X90/100)-기정(50,000원X4회X10개소) = △200
					●플로터 용지 및 전산출력물(플로터잉크) 경정(143,000원X4색X4회X95/100)-기정(143,000원X4색X4회) = △115
	301 일반보상금	3,000	5,000	△2,000	
		3,000	5,000	△2,000	12 기타보상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신고 포상금 경정(500,000원X3건)-기정(500,000원X5건) = △1,000
					◎부동산 중개업법위반 신고 포상금 경정(500,000원X3건)-기정(500,000원X5건) = △1,000
200	사업예산	24,000	12,000	12,000	
220	자체사업	24,000	12,000	12,000	

과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401 시설비및부 대비	24,000	12,000	12,000	
		24,000	12,000	12,000	01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2,000 ●도로명판 제작 경정(400,000원X30개)-기정(400,000원X18개) = 4,800 ●건물번호판 제작 경정(12,000원X1,000개)-기정(12,000원X400개) = 7,200
세출합계		40,202,046	37,562,401	2,639,645	
일반회계세출총계		680,440,838	560,141,038	120,299,800	